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 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와 책임은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제주4·3기록물의 문화유산적 가치를 통해 본
세계기록유산 등재 가능성 연구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自然 · 文化 遺產 教育 學科

玄 秀 成

2019年 6月

제주4·3기록물의 문화유산적 가치를 통해 본 세계기록유산 등재 가능성 연구

指導教授 張 承 姬

玄 秀 成

이 논문을 사회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9年 6月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현수성의 사회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印)

위 원 _____ (印)

위 원 _____ (印)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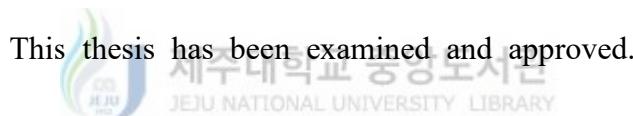
2019年 6月

A Study on the Possibility of Registering the Memory
of the World through the Cultural Heritage Value of
Jeju 4·3Events Archives

Su-Seong Hyun
(Supervised by Professor Seung-Hee Jang)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Social Education [Master of Natural and Cultural Heritage Education]

2019. 6.



.....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
.....
.....

Thesis Director, Jang Seung Hee,
Prof. of Natural and Cultural Heritage Education

.....
.....
.....

(Name and signature)

.....
Date

Department of Natural and Cultural Herit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SOCIAL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선행 연구 분석 및 이론적 배경	4
3. 연구 방법 및 연구 자료	11
II. 제주4·3기록물의 문화유산적 가치	13
1. 제주4·3기록물의 개념 및 특징	13
2. 등재 대상 범주 설정	17
3. 제주4·3기록물의 문화유산적 가치	26
III. 세계기록유산 사업을 통해 본 제주4·3기록물	31
1. 세계기록유산 사업의 배경 및 목적	31
2. 세계기록유산 등재 대상 및 등재 기준	34
3. 세계기록유산 국내 및 국외 등재 사례	40
IV. 제주4·3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가능성	52
1. 제주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52
2. 제주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가능성 검토	53
3. 제주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제언	57

V. 결론	60
1. 연구 결과 정리	60
2. 연구 의의와 향후 과제	61
참 고 문 헌	63
Abstract	68



표 목차

〈표 1〉 4·3자료집 주요 내용	14
〈표 2〉 제주4·3평화재단 소장 사료 현황	15
〈표 3〉 미 군정 기록물 예시	19
〈표 4〉 정부 및 군·경 기록물 예시	21
〈표 5〉 무장대 기록물 예시	23
〈표 6〉 피해조사 기록물 예시	24
〈표 7〉 구술 기록물 예시	26
〈표 8〉 세계유산 시행 근거 및 운영 조직	32
〈표 9〉 세계기록유산 사업 목적	33
〈표 10〉 세계기록유산 등재 대상	35
〈표 11〉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준	35
〈표 12〉 국내 세계기록유산 등재 현황	44
〈표 13〉 국외 세계기록유산 등재 사례	46
〈표 14〉 등재 신청서 기재 비교 기준	50
〈표 15〉 세계기록유산 국내 공모 선정률	54
〈표 16〉 세계기록유산 최종 등재 성공률	54

【국문초록】

제주4·3기록물의 문화유산적 가치를 통해 본 세계기록유산 등재 가능성 연구

현 수 성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자연·문화유산교육학과

지도교수 장 승 희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4·3사건에 관한 기록과 기억의 모음인 ‘제주4·3기록물’의 문화유산적 가치를 파악하고 그것의 세계기록유산 등재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이다. 세계기록유산의 등재를 위해서는 여러 조건들이 요구되며, 제주4·3기록물은 역사학·기록학·문화유산학적 가치의 측면에서 인류사에서 기억되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고 판단된다. 제주4·3기록물은 각각의 기록들의 고유한 특성들에도 불구하고 그 것들의 기원과 유래가 정확하게 확인된다는 점에서 세계기록유산의 조건인 ‘진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제주4·3사건의 특이성과 등재 대상 기록물의 유일성의 측면에서 볼 때, 제주4·3기록물은 인류 사회에서 없어져서는 안 되는 소중한 기록이라는 점에서 세계기록유산의 조건인 ‘독창성’과 ‘비대체성’에도 부합한다. 더불어 ‘세계적 중요성’이라는 세계기록유산 기준에서는 시간·장소·사람·주제와 테마·형식과 스타일로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는데, ‘시간’과 관련하여 제주4·3기록물을 대표하는 개념은 바로 ‘냉전’이고, ‘장소’와 관련해서는 ‘제주도’이다. 제주도는 제주4·3사건의 발생과 전개 과정의 장소로서 의미, 그 사건 이후 역사적 해결을 위한 제주4·3사건의 진상 규명운동의 중심지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또한 제주4·3기록물과 관계되는 ‘사람’은 다양한데, 가장 중요한 주체는 제주4·3사건 당시 희생된 모든 사람일 것이며 직간접적 관련자들도 존재한다. 제주4·3기록물의 ‘주제와 테마’로는 ‘폭력’과 이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통한 ‘과거사 정리’가 될 것이다. ‘형식과 스타일’ 측면에서 제주4·3기록물은 크게 문헌기록과 구술 기록물로 나눌 수 있다. 제주4·3기록물은 문화 유산적 가치의 측면에서 역사적·학술적·상징적 가치가 충분한 인류 기록유산이다.

이에 제주4·3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은 문화유산의 관점에서 그 필요성이 확인되는데, 세계기록유산 사업의 기준을 통해 볼 때 제주4·3기록물은 진정성, 고유성, 비대체성 및 세계적 중요성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주4·3기록물들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가능성의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 첫째로 제주4·3기록물의 등재는 세계기록유산의 주요 목적과 부합한다. 둘째로 제주4·3기록물을 구성하는 기록들이 세계기록유산의 등재 대상에 각각 해당하고 등재 기준을 충족시킨다. 셋째는 기존 제주4·3사건에 관한 학술적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인프라와 경험 노하우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반면, 등재 가능성의 부정적 측면으로는, 첫째, 유네스코에서 세계기록유산 등재 접수를 받지 않고 있다는 점, 둘째, 소장되어 있는 다양한 기관의 기록물들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모든 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 셋째, 제주4·3사건의 성격을 드러내는 정확한 명칭이 없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유산적 가치의 측면을 고려할 때 제주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제주4·3사건의 문화유산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등재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제주4·3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현황과 등재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첫째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는 제주4·3기록물에 대한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대한 정확한 목표 설정,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로 이에 대한 충분한 학술적 검토를 거친 후에 선별적으로 기록을 등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제주4·3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사전에 제주4·3기록물의 문화유산적 가치를 파악해보고, 세계기록유산 등재 가능성을 점검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문화유산의 활용을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 등재 대상 문화유산의 가치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고, 등재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연구 결과, 제주4·3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필요성이 확인되었고, 등재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된다. 다만, 등재의 방법에 있어 더 많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고, 등재 시기는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제주4·3사건, 제주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가능성, 문화유산활용,
역사적·학술적·상징적 가치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주4·3사건은 당시 제주도 인구의 약 10%에 해당하는 3만여 명의 희생자를 낳았던 역사적 사건이다. 사건 발생 시기와 희생자 규모 면에서 중요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제주4·3사건에 관한 구체적 논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는데 그 이유는 사건의 실체를 입증할 공문서가 별로 없다는 점, 소수의 기록이 존재하더라도 이에 대한 접근이 어려웠다는 점에 기인한다. 한국전쟁 이후 성립되어 굳어져 버린 반공주의에 의해 당시 가해졌던 피해의 기억에 대한 억압 및 탄압으로 제주도민이 강제적으로 침묵하게 된 것 역시 주요한 원인 가운데 일부이다. 결국, 공적 기록의 부재와 접근의 제한 그리고 사적 기억의 강요된 망각이 원인이 되어 제주4·3사건에 관한 논의가 제한되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¹⁾

1987년 6월 항쟁 이후 비로소 제주4·3사건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제주 지역 언론과 연구단체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상규명(眞相糾明)의 노력이 펼쳐졌다.²⁾ 노력의 성과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이 2000년 1월 제정·공포되었다. 이후 제주4·3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사건과 관련된 핵심적 내용과 쟁점 사항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이하 『진상조사보고서』)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이하 제주4·3위원회)에 의해 발간되었다. 2003년 10월 정부는 제주4·3사건이 국가권력에 의한 잘못이었음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하였고,³⁾ 2014년에는 4월 3일을 국가지정 추념일로 지정하기에 이르렀다. 정부에 의해 제주4·3사건이 ‘비공식적 침묵의 역사’에서 ‘공식적 추념의 역사’로 전환된 것이다.

1)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고,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제주4·3사건을 전후하여, 1946년 10월 대구를 중심으로 한 경상북도 지역에서 ‘10월 사건’이, 1948년 10월 여수와 순천을 중심으로 한 전라남도 지역에서 ‘여순사건’이 발생하였으며,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였다. 제주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이하 제주4·3위원회),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도서출판 선인, 2003, pp.45-55, pp.363-371.

2) 김영범, “기억에서 대항 기억으로 혹은 역사적 진실의 회복: 기억투쟁으로서의 4·3 문화운동 서설”, 전남대 5·18연구소, 『민주주의와 인권』 제3권 제2호, 2003, pp.8-13.

3) 제주4·3위원회, 『화해와 상생: 제주4·3위원회 백서』, 일흥, 2008, pp.506-519.

이러한 진상규명 및 사건 해결 과정은 세계인들에게 중요한 성공 사례로 인식되어갔고, 이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과거사 정리의 모범사례로 인정받게 되었다.⁴⁾ 역사적 인식의 전환이 가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앞서 언급된 진상규명 과정이 있었다. 당시 제주4·3사건 관련 ‘기록의 발굴’과 ‘기억의 수집’이 없었다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은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이다.⁵⁾

제주4·3사건에 관한 기록과 기억의 모음이라 할 수 있는 ‘제주4·3기록물’은 발굴되거나 수집되어 진상규명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었을 뿐 그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제대로 연구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통합적 관리나 활용도 이뤄지지 못하였다. 그러나 시각을 달리하면, 이것들을 하나의 문화유산으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문화유산을 인문학 및 사회과학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야의 주제를 이해할 수 있는 ‘결정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제주4·3기록물은 제주4·3사건의 역사적 배경과 정치적 상황 그리고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역사·정치·철학 분야를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능체’가 되기 때문이다.⁶⁾ 그렇다면 제주4·3기록물은 단지 제주도민에게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에게 의미를 줄 수 있는 문화유산의 가능성은 가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4·3기록물은 인류 사회에 있어 의미 있는 유산(遺產)이 될 가능성을 가지며, 당시 강요된 침묵의 역사를 극복하고 폭력의 역사를 복원하기 위한 노력과 의지의 실현으로서 ‘상징적’인 가치를 지닐 수 있다. 제주4·3사건과 제주4·3기록물이 연구 주제 및 자료가 되어 다양한 학문에서 학술적 성과를 창출해내고 있다면 이는 ‘학술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는 미래세대가 기억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계승되어야 할 ‘역사적’인 가치를 갖는다고도 할 수 있다. 이처럼 상징적·학술적·역사적 중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제주4·3기록물은 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높다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출발점은 여기서 시작한다. 지금까지 제주4·3사건 연구는 역사학과 정치학 측면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 연구들은 제주4·3사건이 알려지고 진상이 규명되는 데는 기여한 측면이 많다. 하지만 이러한 학문적 성과의 밑바탕이 되었던 제주4·3기록물을 어떤 방법으로 인식하고, 활용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은 부족했다.

4) 김현준, “해외에서 4·3연구 동향과 4·3의 세계화 방향”, 제주4·3연구소, 『4·3과 역사』 제11호, 도서출판 각, 2011, pp.127-128.

5) 기록의 발굴과 기억의 수집에 관한 내용은 다음의 두 단행본을 참조. 양조훈, 『4·3, 그 진실을 찾아서』, 도서출판 선인, 2015, pp.17-106; 박찬식, 『4·3과 제주 역사』, 도서출판 각, 2008, pp.477-496.

6) 고려대학교 문화유산학 협동과정에서 문화유산의 결정체와 기능체 개념을 참조.(검색일:2019.05.30).

이에 본 연구는 제주4·3기록물을 문화유산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이를 통합적이고 미래지향적 사회의 대비를 위한 계기 마련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데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 제주4·3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여, 문화유산으로서 활용 가치에 대해 주목해보고자 한다. 문화유산은 기본적으로 인류 모두가 보호해야 할 대상이다. 제주4·3기록물을 문화유산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그 의미와 가치를 특정 학문 분야의 시작이 아닌 인류 전체의 보편적인 시작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런 관점에서 제주4·3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노력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는 제주4·3사건 70주년을 맞아 제주4·3정신의 세계화 방안의 하나로 이를 문화유산으로 활용하여 그 의미와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어떤 주제를 문화유산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문화유산들의 활용에 대한 비교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비교연구는 해당 문화유산의 가치를 문화유산의 향유 대상에게 보급하기 위한 기초적이고 중요한 작업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제주4·3기록물의 문화유산적 가치를 통해 세계기록유산 등재 가능성 타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제주4·3기록물이 지니는 문화유산적 가치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연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주4·3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필요성을 확인하고,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및 분석하여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제주도는 이미 유네스코에서 인증하는 다양한 세계유산을 가지고 있으나 세계유산 등재라는 목적 달성에만 급급했지 정작 이를 활용할 방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고민은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⁷⁾ 따라서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이번 기회를 통해 충분한 학술적·사회적 논의의 과정을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서 출발한다. 세계기록유산 등재라는 문화유산의 활용은 등재 대상에 내재하고 있는 가치 및 추진 과정과 등재 가능성에 대해 비판적 검토 과정 이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7)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제주의 유산은 자연유산으로 2007년 등재된 ‘화산섬과 용암동굴’,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2009년 등재된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과 2016년 등재된 ‘제주 해녀 문화’가 있다. 세계자연유산센터, 해녀박물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검색(검색일:2019.05.30).

2. 선행 연구 분석 및 이론적 배경

1) 선행 연구 분석

제주4·3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가능성을 연구하기 위해 우선 제주4·3사건과 세계기록유산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제주4·3사건에 관한 연구⁸⁾는 사건의 성격상 국내에서 먼저 이루어지지 못하였는데, 국외에서는 미국의 존 메릴(John Merrill)의 연구, 이에 영향을 받아 국내에서 양한권(1988)과 박명림(1988)이 수행한 연구가 그 시초라고 할 수 있다.

존 메릴(1975)의 연구는 제주4·3사건에 관한 체계적인 첫 연구로 꼽힌다. 국외 연구가로서 당시의 미 군정에 의해 작성된 기록을 통해 비교적 객관적으로 제주4·3사건에 대해서 연구했다는 측면이 있으나, 미국 국익의 관점에서 제주4·3사건을 바라본다는 한계도 있다.⁹⁾

양한권(1988)은 제주4·3사건이 세계 2차 대전이 종결된 이후 최초로 발생한 조직적인 반미투쟁이라고 말하며, 결과적으로 이는 대규모 유혈 참사를 낳아 제주도민에게 막대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가져왔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폭동의 배경에는 제주의 역사적 경험과 미 군정 당시의 정치·경제적 상황 등에 의한 복합적인 요인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명림(1988)은 제주4·3사건이 한국 현대사에서 의미하는 바는 민중항쟁으로서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 분단국가 형성세력에 대한 저항으로서 분단의 역사에서 한 획을 긋는 분기점이라 보고 있다. 한국전쟁이 2차 대전의 종결과 함께 시작된 세계질서재편작업 속에서 치열했던 갈등을 거쳐 폭발한 국제적 내전이라면, 제주4·3사건은 한국전쟁으로 가는 전조(前兆)라고 보았다.

제주4·3사건에 관한 연구의 분기점은 4·3특별법의 제정·공포와 진상조사보고서의 발간이라 할 수 있다. 이후 제주4·3사건에 관한 연구를 촉발했기 때문이다. 진상조사보고서는 제주4·3사건을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과 서북청년단의 탄압에 대한 저항 그리고 단독선거와 단독정부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8) 제주4·3아카이브 및 제주4·3연구소에 게시된 논문 현황을 참조함(검색일:2019.05.30)

9) 존 메릴(John Merrill)의 연구는 1975년 하버드대 석사학위 논문으로 발표되었으나 국내에 소개된 것은 1988년 이후이며, 필자는 이 논문을 노민영(2018)이 엮은 단행본 『잠들지 않는 남도』를 통해 분석하였다.

제주도당 무장대가 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죽 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이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정의하고 있다.¹⁰⁾ 이에 대해 양정심(2005)은 지금까지 제주4·3 사건 연구에 관한 논의 중 ‘항쟁의 역사’는 배제됨을 지적하고 제주4·3사건 당시의 주도세력의 주체적인 역할을 강조하였다. 『진상조사보고서』는 정부 공식 보고서로서 제주4·3사건의 피해에 집중하여 작성된 점을 지적하고, 제주4·3사건에 대해 수동적 접근보다 이들의 항쟁의 역사가 조명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허호준(2010)은 냉전체제 국민 국가 형성기에 일어난 민간인 학살의 사례로 그리스와 제주 지역을 비교 분석하였다. 비교 대상의 규모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리스에서의 학살과 제주에서의 학살은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를 통해 냉전의 세계적 질서가 아시아와 유럽에서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지금까지 제주4·3사건에 관한 연구는 4·3특별법 제정 이후 점차 다양한 학문 분야로 발전하기는 하였지만 주로 정치학과 역사학의 분야에서 집중되었는데, 최근 제주4·3사건 선행 연구 중 기록학의 관점에서 접근된 연구는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관련하여 주목할만하다.

조유정(2019)은 ‘제주4·3사건기록’의 수집 정책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제주4·3 평화재단에서 구축·운영하고 있는 제주4·3아카이브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제주4·3사건기록이 가지는 특성을 도출하고, 여기서 나타난 문제점을 토대로 제주4·3사건 기록 수집 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서유림(2019)은 제주4·3평화재단 소장기록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는데, 제주4·3 사건에 대한 추가 진상조사와 후속 사업을 위해 ‘제주4·3기록’의 수집과 제공이 필요하며 기록 자체에 대한 분석과 주제 분류를 통하여 기록의 성격과 특징을 규명함으로써 기록물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제주4·3아카이브가 이용자들이 사용하고 정보를 얻기 쉬운 공간으로 자리매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연구들은 비록 제주4·3사건에 관한 이해나 관점에서 기존의 연구들과 차이가 있기는 하나, 기록학 관점에서 제주4·3기록물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분석 개념들을 제시해줌으로써, 문화유산적 가치를 파악하고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가능성은 파악하는 데 있어 연결고리의 역할을 할 수 있다.

10) 제주4·3위원회, 앞의 보고서, pp.533-540.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해, 제주4·3사건에 관한 연구는 국외에서 먼저 시작되었다는 점, 이후 국내에서 활성화되었다는 점, 4·3특별법 제정 및 공포 이후 연구의 양이 증가했다는 점, 학문 분야가 다양화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고, 최근 기록학의 관점에서 연구가 시작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다음은 세계기록유산 사업에 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해보겠다. 박성진(2008)은 세계기록유산 제도의 고도화를 위한 연구에서, 세계기록유산 제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활동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그 의미와 가치를 파악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는 세계기록유산 제도가 가지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송정은(2009)은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유럽과 북아메리카 기록유산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세계기록유산의 등재된 목록을 생산 시기, 생산 매체, 주제, 기록이 가지는 영향력 그리고 원형 및 원본성에 기준에 맞추어 분석하였고,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세계기록유산 제도의 객관성과 균형성을 확보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귀배(2016)는 세계기록유산을 하나의 사업이라고 보고 이에 따른 제도적 기반과 추진 사업 및 운영에 있어서 쟁점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세계기록유산 사업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아 운영되기 시작한 지는 오래되었으나 상대적으로 운영 방식이 취약한 점 이에 따라 기록유산의 정치화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해, 세계기록유산에 관한 연구는 등재 기준과 사업 자체의 문제점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었으나, 이는 기본적으로 세계기록유산 사업이 의미와 가치가 있으며 현재 기준에 의해 운영이 잘 되고 있으나 보다 객관적인 등재 기준을 가진 유산으로의 개선을 위한 연구라 할 수 있다.

2) 이론적 배경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록학 및 문화유산학의 주요 개념에 대한 이론적 배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는 제주4·3기록물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파악하기 위한 작업에 필요하다.

‘기록학’이란 기록된 자료의 평가와 수집 및 활용에 관한 다양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이론을 연구하는 학문이다.¹¹⁾ 기록학의 주요한 연구대상인 ‘기록(Records)’은 개인 혹은 조직이 업무 활동 과정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로서 일정한 내용과 구조 그리고 맥락을 가지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다. 기록의 개념과 함께 기록이 가지는 속성이 중요한데, 기록학에서는 기록의 4대 속성을 진본성·신뢰성·무결성·이용 가능성으로 제시하고 있다. ‘진본성’이란 기록이 생산 당시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적절한 사람에 의해서 생산된 것인지 그 기록에 출처와 기원에 대해서 증명이 가능한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신뢰성’이란 기록의 내용이 업무처리 활동 혹은 사실을 충분히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믿을 수 있는지를 말한다. ‘무결성’은 기록 자체나 기록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고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지칭한다. ‘이용 가능성’은 기록에 접근하여 위치파악·검색·추적이 가능하며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에 관한 특성이다.¹²⁾

기록의 정의와 속성을 근거로 하여 기록이 가지고 있는 내용과 정보의 가치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기록의 가치는 정보적·증거적·역사적 가치가 있다.¹³⁾ ‘정보적 가치’는 기록물에 포함된 정보가 생산 당시의 사용 목적을 넘어서서 다양한 이용가치를 갖게 됨으로써 생기는 가치를 의미한다. ‘증거적 가치’는 역사적 의미에서의 증거와 관련하여 파생되는 가치다. ‘역사적 가치’는 영구기록물 관리 기관에서 영구보존하여 후대에 전승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따른 가치를 말한다.

앞서 살펴본 개념인 기록과 본 연구에서 사용하게 될 기록물(Archives)의 개념이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전명혁(2005)에 따르면, 일본 기록학계에서 사용되는 ‘기록’의 의미는 시대와 형태를 불문하고 인간이 기록해온 모든 정보를 지칭한다. 반면 ‘기록물’이란 역사적 혹은 문화적 가치로 인하여 사료로 영구히 보존된 것 혹은 보존되어야 할 것을 의미한다고 정리하고 있다.¹⁴⁾ 공공기록물법에서 정의하는

11) 한국기록학회, 『기록학용어사전』, 역사비평사, 2008, p.63.

12) 국가기록원, 『기록학 개론』, 국가기록원, 2011, pp.10-12.

13) 기록의 일차적 가치는 기록을 생산한 주체가 직접적으로 얻는 가치이며, 이차적 가치는 생산자 이외에 대상이 가질 수 있는 부수적이고 다양한 가치이다. 제주4·3사건과 관련된 기록의 경우 기록의 생산 주체인 조직이 해체되거나 임무가 완료됨에 따라 일차적 가치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무의미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번 논의와 직접 연관되는 이차적 가치에 대해서만 언급한다.

14) 전명혁, “기록과 역사 역사서술에서 기록물과 사료, 역사이론의 관계”, 한국기록학회, 『기록학연구』 제11호, 2005, pp.122-142.

‘기록물’이란 각종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및 접수한 문서 등의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 등을 말한다.¹⁵⁾ 김정하(2007)에 따르면 기록물은 자연스러운 과정을 통해 형성되며, 실제적·행정적·사법적 활동의 결과로 축적된 결과물로서 상호 간에 ‘독창적’이고 ‘구체적’인 관계로 형성된 문서들 전체를 의미한다.¹⁶⁾ 공공기록물법과 김정하 모두 기록물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지만 부족한 점은 이 개념 안에 민간기록과 같은 다양한 주체가 생산할 수 있는 기록이 폭넓게 다루어지지 못함으로써 ‘기록 생산 주체의 다양성’과 이에 따른 ‘기록 내용과 형태의 다양성’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이루어지는 기록물에 대한 논의는 이러한 기록물의 정의의 부족함에 대한 보완과 기록관리의 개념이 변화하고 있는 것을 반영하려 한다. 기록관리에서 기록물에 관한 전통적 개념은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기록이었다. 하지만 여기에 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하여 전해지는 기록의 경우도 국가적으로 보존이 필요할 시에는 공공기록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 기록물에 대한 개념 변화이다. 이를 토대로 정리한 ‘기록물의 의미’는 기록들의 상호 연관성에 근거하여 이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주는 것’ 그리고 ‘기록의 특성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면, 기록이라는 용어가 사용될 때에는 형식이나 매체와 관계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되거나 접수되는 기록을 의미하며, 현용 기록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기록물의 개념은 기록 중에서 선별되어 영구보존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영구보존기록물 혹은 그것을 보관하기 위한 장소의 의미로 쓰인다. 현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록이 아니므로 참고하여 연구할 만한 가치를 지니는 비현용 기록물의 의미로 사용된다.

일반적 의미에서 유산은 앞 세대가 물려준 중요한 사물 혹은 문화를 말하는데, ‘기록 유산’이란 기록의 개념에 더해 유산으로서 특별한 가치가 있어서 현재 세대가 미래 세대에게 전달 해주어야 할 것이라 할 수 있다. 송정은(2009)은 기록유산의 개념을 역사기록물, 기록 문화재, 국가지정기록물, 세계기록유산을 통해 설명하였다.¹⁷⁾ 전소윤(2014)은 기록유산의 개념을 지정문화재, 국가지정기록물, 세계기록유산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¹⁸⁾

15)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검색일:2019.05.30).

16) 김정하, 『기록물관리학 개론』, 아카넷, 2007, p.24-25.

17) 송정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준의 개선방안연구: 유럽·북아메리카 기록유산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기록관리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9, pp.9-12.

18) 전소윤, 「한국 세계기록유산 관련 정보의 활용 방안」, 경북대학교 기록학과 석사학위 논문, 2014, pp.11-13.

이정연(2015)은 유네스코에서 내린 정의와 기록학계에서 논의된 개념을 중심으로 ‘인권기록유산’을 정의하였는데, 핵심이 되는 개념은 인권 침해와 권력 남용이다.¹⁹⁾

‘문화유산학’이란 문화유산의 창출·보존·계승과 관련하여 문화유산과 관련된 개념 및 종류별 문화유산의 특징과 제도 등을 포함한 이론적 측면과 각각의 문화유산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정리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다루는 실제적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²⁰⁾ 문화유산학의 연구 대상인 문화유산과 문화재는 일상생활에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²¹⁾ 문화재는 소유와 가치가 분명한 동산(動產) 유물에서 개념이 출발하였다.²²⁾ 문화재보호법에는 ‘문화재’를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 중에서 대상이 명시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²³⁾ 문화재는 형성 원인, 가치를 향유 하는 대상, 문화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치라는 세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되어 정의될 수 있는 것이며, 문화유산의 개념을 문화재라는 경제적 가치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이 법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외는 다르게 문화유산을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류호철(2015)은 문화유산은 ‘재산으로서의 가치’와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더해져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며 재산으로서의 가치는 실제 문화유산의 보유자에게 소유권이 있으나,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는 공공의 것으로 지역사회와 국가 사회, 나아가서 인류 사회가 모두 공유한다고 말하고 있다.²⁴⁾ 신희권(2018) 역시 문화유산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근거로서 ‘재산적 가치’에서 ‘유산적 가치’로 인식이 전환됨에 따라 세계적으로 문화유산으로 쓰이고 있다고 설명한다.

문화유산의 종류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유형 문화재이다. ‘유형 문화재’란 일반적으로 건조물이나 서적과 같은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라고 정의된다.

19) 이정연, “인권 기록유산의 가치와 지평의 확산: 5·18민주화운동기록물을 중심으로”, 한국기록학회, 『기록학연구』 제45호, 2015, pp.121-153.

20) 신희권, 『문화유산학 개론』, 사회평론아카데미, 2018, pp.5-9; 고려대학교 문화유산학협동과정 홈페이지 좌측 상단 메뉴에 ‘학과 소개 및 교육 목표’에서 검색한 내용을 토대로 문화유산학의 개념과 문화유산의 기능에 대해 논하였다.(검색일:2019.05.30).

21) 신희권, 앞의 책, p.17.

22) 이수정, 『문화재 보존윤리』, 그래픽코리아, 2017, p.39.

23) 문화재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검색일:2019.05.12).

24) 류호철, 「공공재로서 문화유산의 의의와 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5, p.7.

일반인에게 친숙한 보물·국보·사적 등이 이에 해당한다.²⁵⁾ 제주4·3기록물의 경우 문화유산의 다양한 종류 중 유형 문화재로서 일반동산문화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일반동산문화재’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 혹은 등록되지 않은 문화재 중 동산(動產)에 속하는 문화재라고 할 수 있다.²⁶⁾ 제주4·3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은 이를 세계유산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세계유산’이란 국제연합 교육과학 문화기구 유네스코(이하 유네스코)가 인류를 위해 꼭 지켜야 한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해 특정 기준을 설정하여 지정하고 있는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세계기록유산 세 종류의 유산을 의미한다. 이 중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이란 기록유산 보호 일반지침에 따라 세계적으로 의미 있는 기록을 보존하고 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며, 기록유산의 존재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정된 유산을 의미한다.²⁷⁾

문화재보호법에 의하면 문화유산의 가치는 역사적·학술적·예술적·경관적 가치로 설명할 수 있다.²⁸⁾ 이수정(2017)은 문화유산의 가치를 개념화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나, 한 시대의 사회·문화·정치에 대한 주요 사실, 시대적 상황이나 기타 역사를 재구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실을 알려주는 데에 있으며, ‘학술적 가치’는 한 시대의 흐름이나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정보에 있다. 문화유산의 ‘상징적 가치’란 특정한 사회적, 문화적, 시대적 상황에서 평가되는 가치로서 해당 사회 구성원이 문화유산을 통해 지니게 되는 물질적·정신적 연대감이나 공통된 정서와 감정을 말한다.²⁹⁾

제주4·3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제주4·3사건에 관한 기록과 기억을 단지 역사적 사료 혹은 기록학의 연구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학문의 도움을 통해 문화유산으로서 바라보고 활용한다는 의미이다. 여기에서 문화유산의 활용이란 문화유산이 가지는 가치를 확대하여 극대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가치의 재인식·전환·재창조·극대화·융합 5가지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³⁰⁾ 이진우(2018)는 문화유산의 활용 및 문화유산의 가치는 국가나 집단과 같은 공급자가 부여하는 일방적·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라 수요자이자 향유자가 느끼는 상대적 가치가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25) 신희권, 앞의 책, pp.97-105, pp.119-120.

26) 위의 책, p.100.

27) 위의 책, pp.265-271.

28) 본 연구에서 논하는 가치는 기록유산 및 기록물에 관한 것으로, 명승이나 기념물과 관계 깊은 예술적·경관적 가치는 논하지 않는다.

29) 이수정, 앞의 책, pp.50-61.

30) 신희권, 앞의 책, pp.342-343.

이에 따라 문화유산에 대한 가치 판단과 활용의 방향성 제시는 특정 전문가가 아닌 다양한 주체로서 일반인의 관점이 투영된 상대적 측면에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³¹⁾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제주4·3기록물의 문화유산적 가치를 역사적·학술적·상징적 가치를 통해 파악하여 세계기록유산 등재의 필요성을 확인하는데 유용한 분석적 개념으로 사용하겠다.

3. 연구 방법 및 연구 자료

본 연구는 제주4·3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의 필요성 확인, 가능성 모색, 방향성 제시의 3단계를 다음과 같은 연구 방법을 통해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제주4·3기록물의 개념을 정의하고 현황 및 특징을 파악해 문화유산적 가치를 파악하려고 한다. 등재 추진 기관인 제주도가 제시한 등재 대상 범주와 기록의 의미나 가치가 다른 연구자에 의해 먼저 연구된 제주4·3기록물의 몇 가지 사례를 참고하여 등재대상의 범주를 설정하려고 한다. 설정된 범주에 기록물에 대한 가치를 파악하여 제주4·3기록물이 문화유산적 가치를 탐색하여, 세계기록유산 등재의 필요성을 확인할 것이다.

둘째, 세계기록유산 사업을 통해 제주4·3기록물을 바라보기 위하여 세계기록유산 사업에 대한 이해와 등재 사례를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사업의 추진 배경과 목적이 무엇이며, 등재 가능한 대상은 어떠한 것이 있고 이에 따른 등재 기준은 무엇인지를 파악하려고 한다. 이를 토대로 국내 및 국외 등재 사례를 참고하여 제주4·3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의 가능성을 모색하려 한다.

셋째, 제주4·3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가능성에 대해서 분석하려고 한다. 제주도에서 등재 추진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르는 문제점들이 있는지 파악하고, 이를 종합하여 어떤 방향으로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언을 할 것이다.

31) 이진우, 「문화유산 활용의 이론과 활성화 체계 연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유산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8, pp.272-274.

본 연구의 진행을 위해 필요한 연구 자료는 제주4·3기록물 관련 자료와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관련된 자료들이 있다.

제주4·3기록물 관련 자료에 관해서 제주4·3평화재단은 평화공원 내에 기념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온라인상에는 제주4·3아카이브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기념관은 제주4·3사건 관련 문서와 사진 및 영상을 통해 사건의 전개 과정상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기록물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공간이다. 제주4·3아카이브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양한 제주4·3기록물을 제공하고 있다. 제주4·3위원회에서 발간한 『진상조사보고서』(2003)와 『화해와 상생 백서』(2008), 제주4·3평화재단에서 발간한 『재단 10년사』(2018), 『4·3화해보고서:어둠에서 빛으로』(2017)는 이번 연구에서 주요한 연구 자료이다.

세계기록유산 관련 자료는 세계기록유산 홈페이지에 영문으로 게시되어 있거나,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주요 자료로는 한국국학진흥원에서 발간한 『한국의 세계기록유산』(2018)과 유네스코에서 발간한 『세계의 기록유산』(2015)이 있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 회의록과 2년마다 열리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 총회 자료도 중요한 연구 자료라 할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 세계기록유산 등재 가능성을 연구하는 데 있어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는 제주4·3기록물에 대한 제주도의 공식적 입장과 준비 상태 그리고 추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이를 토대로 세계기록유산 등재의 필요성과 가능성 및 방향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³²⁾

32) 이와 관련하여 제주도청 홈페이지에는 부서별로 업무에 대한 역할이 정리되어 있는데 세계기록유산 등재 관련 내용을 제주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검색일:2019.05.30).

II. 제주4·3기록물의 문화유산적 가치

1. 제주4·3기록물의 개념 및 특징

1) 제주4·3기록물의 개념

제주4·3기록물의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도록 하겠다.³³⁾ 서유림(2019)에 따르면, 제주4·3기록이란 “제주4·3사건의 배경이 되는 일련의 사건과 전개 과정 그리고 진상규명 및 기념 운동 과정과 관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에 있는 집단과 개인이 생산한 기록이다.”³⁴⁾ 그의 개념 중 본 연구에 목적을 고려하여 제주4·3기록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몇 개의 범주로 구분 지어 정의하려 한다. 시기와 내용을 고려한 제주4·3기록을 아래와 같이 개념화하려 하겠다.

첫째, 제주4·3사건 당시의 역사적 기록으로서 사건의 주요 행위자들이 생산한 기록.



둘째, 제주4·3사건의 종결 이후 4·3특별법 시행 이전까지 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 피해조사를 위해 생산되거나 수집된 기록.

셋째, 4·3특별법 이후 각종 조사 및 연구에서 제주4·3사건의 추가적 진상규명과 피해조사를 위해 생산되거나 수집된 기록 혹은 채록된 증언의 결과물로서 기록.

넷째, 시기의 구분을 떠나 제주4·3사건 당시의 참여자로서, 당시 기록이나 기억에 대해 생산해낸 회고록·유고록·참전기 형식의 사후적 기록.

33) 제주4·3사건 당시 개인에 의해 생산된 다양한 내용과 형태의 기록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는 기록물로서 연구되기에에는 기록의 수집 정도가 매우 부족하고 이에 따라 연구의 축적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34) 기념 운동은 주기적으로 제주4·3사건 희생자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추모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기록의 영역’이라기 보다는 ‘예술의 영역’에 더 가깝다고 생각되며, 이에 따라 문화유산적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주관적으로 적용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이를 제주4·3기록의 범위로 파악할 경우 기록물의 범위가 넓어지게 됨에 따라 문화유산적 가치에 대한 평가가 어렵게 된다. 서유림, 앞의 논문, p.10.

종합하면, 제주4·3기록물이란 앞서 정의한 제주4·3기록을 특정한 기준에 맞게 구분하여 모아놓은 수집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주도라는 기록의 생산과 접수가 이루어졌던 물리적 공간과 냉전 체제 형성기라는 시간적 배경, 제주4·3사건 당시에 있었던 다양한 폭력과 피해의 역사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진상규명의 노력과 그 성과가 모두 반영되어야 내용적·형식적 구성요소가 다 갖추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³⁵⁾ 제주4·3기록물은 대부분 4·3특별법에 의해 공식적으로 구성된 제주4·3위원회를 통해 수집된 자료들이며 이는 12권의 『제주4·3사건자료집』으로 출간되었다. 아래의 표 1은 제주4·3위원회가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다양한 제주4·3관련 기록과 언론 보도 자료·공문서·외국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해놓은 자료집의 목록 구분과 주요 내용 및 분량 그리고 형태에 관하여 정리해놓은 것이다.

〈표 1〉 4·3자료집 주요 내용

권호	구분	주요 내용	건수	쪽수	비고
1권	신문편①②③	국내신문(45.8~1948.3)	415건	448쪽	책자
2권		국내신문(48.4~1949.3)	464건	540쪽	"
3권		국내신문(49.4~61.11)	519건	640쪽	"
4권	정부문서 국회속기록, 잡지편	국무회의록/대통령재가문서 /국회속기록/국내잡지	134건	551쪽	"
5권	군경자료	작전명령/인사명령/육군역사일지 /경찰정보보고서	200건	507쪽	"
6권	관보편	미군정청법령/임명사령 /대한민국 관보	132건	572쪽	"
7권	미국자료편 ①②③④⑤	주한미육군사령부	387건	502쪽	"
8권		미6사단/7사단/군사고문단/971방첩대 /주한미군사유엔한국임시위원회	243건	469쪽	"
9권		군정청/고문관실	137건	516쪽	"
10권		미국동군사령부/합동주간정보분석 /미국정부/대한민국정부	153건	422쪽	"
11권		주한미사절단/주한미대사관 /민간인문서/미국신문	136건	405쪽	"
12권	북한·러시아·무장대 자료편	북한신문·기관지·잡지 /러시아 자료/무장대 자료	99건	275쪽	복사본

출처: 화해와 상생(2008)을 토대로 필자가 재작성³⁶⁾

35) 제주4·3기록이 제주4·3사건과 관련된 다양한 주체에 의해 생산된 개별 단위 기록이라고 한다면, 제주4·3기록물은 이 개별 기록들을 포함하며, 동시에 기록들이 특정 기준과 질서에 의해 수집·보관·정리되어 있는 기록의 단위 혹은 묶음이라고 할 수 있다.

36) 제주4·3위원회, 앞의 백서, p.86.

제주4·3기록을 수집하고 보관 및 관리하는 기관은 제주4·3평화재단이다. 제주4·3평화재단은 공식적으로 2008년 10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고 11월 출범하였는데, 2007년 1월 공포된 개정 법률에서 정부가 평화의 증진과 인권의 신장을 위해 제주4·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관리와 추가 진상 조사와 같은 기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진 재단에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는 부분을 명시하여 정부 예산의 출연 근거가 되었다.³⁷⁾ 이와 같은 법률적 근거 와 예산의 지원을 통해 제주4·3평화재단은 관련 기록을 제주4·3평화공원 내 수장 고에 보관하거나 기념관에 전시하고 있다. 아래의 표 2는 제주4·3평화재단에서 소장 및 관리하는 사료의 현황이다.

〈표 2〉 제주4·3평화재단 소장 사료 현황

유형	명칭	수량(점)	비고
문서류 (1,196)	재학증명서, 전단, 엽서, 신분증 등	44점	
	제주4·3통신 1·2·3호	12점	
	도의회 4·3특위 활동자료	2점	
	4·3피해 신고서	214점	
	유족회 입회원서 등	5점	
	유족회 입회원서 등	48점	
	예비검속 예규에관한철, 미 육군 정보 보고 등	763점	
	제주민중항쟁연구 1·2, 4·3연구회보, 4·3장정 등	43점	
	4·3학생문예작품	27점	
	일본군 작전지도, 일본항복문서 등	7점	
	진상규명 호소문 광고, 특별법 서명문서, 김익렬 유고록	14점	
	양민증, 도민증, 신분증명서	4점	
사진류 (63)	석방증명서, 자수증서	11점	
	사진	37점	
	일본군 무장해제 등	6점	
	진상규명 관련 사진	3점	
영상물, 녹음 기록 (1,677)	장갑순 이장 사진	17점	
	게릴라 총살 집행 영상, 미군사고문단 증언 영상 등	94점	
	1,000인 증언 채록물, 현의합장묘, 다랑쉬 위령제 영상 등	1,374점	
	4·3특별기획영상물, 4·3증언(마을별) 등	209점	

출처: 제주4·3평화재단(2018)을 토대로 필자가 재작성³⁸⁾

37)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평화재단 10년사 2008~2018』, 도서출판 각, 2018, p.67.

38) 사료의 현황 전체 중에서 행정박물을 제외하여 발췌함,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평화재단 10년사 2008~2018』, 도서출판 각, 2018, p.276.

2) 제주4·3기록물의 특징

다음으로 제주4·3기록물의 특징에 대하여 논의하겠다. 제주4·3기록물은 그 성격이나 특징에 따라 소장기관이 다양한데, 국가 수준에서 국가기록원, 국회도서관을 비롯한 공공기관 소장 기록물과 지방 수준에서 제주도청, 제주도의회를 비롯한 공공기관 소장 기록물이 있다. 제주4·3연구소와 같은 학술·연구단체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 혹은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도 존재한다.

서유림(2019)은 제주4·3사건 기록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우선 1차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둘째, 4·3사건의 다양한 행위자 중에 군과 경찰, 정부 기관 등 특정 주체에 의한 기록이 편중되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소장 기록이 단체의 활동 결과에 집중되어 그 과정이나 절차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³⁹⁾ 조유정(2019)은 제주4·3사건 기록의 특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우선 오랜 기간 탄압으로 인한 제주4·3사건에 대한 인식 및 여론 왜곡이 다양한 집단에 의하여 다양한 경로로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특히 미군정에 의한 기록은 왜곡이 짚하다고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조유정은 역사적 사건에서 구술 기록물의 신빙성은 떨어지게 마련인데, 제주4·3사건의 경우 역설적이게도 구술 기록물의 신빙성이 더 높고 이에 따라 중요성도 크다는 특성이 있다고 보았다.⁴⁰⁾

종합하여 제주4·3기록물의 특징을 살펴보면, 제주4·3사건 이후 성립된 반공정권과 군사정권 하에서 제주4·3사건에 대한 억압으로 관련된 기록과 기억을 바로 정리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4·3사건의 발생 당시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지 않았던 때이므로 군사점령을 통해 사실상의 통치를 담당하던 미 군정에서 관련된 정보와 기록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4·3사건 당시의 상세한 정보를 담은 기록도 현재 미국의 기록관리기관에 의해 소장 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⁴¹⁾ 미 군정의 기록과 함께 대한민국 정부의 기록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민간기록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특징도 있다.

39) 서유림, 앞의 논문, pp.86-87.

40) 조유정, 앞의 논문, pp.48-52.

41) 정용욱, “4·3연구와 미군정 자료”, 제주4·3연구소, 『4·3과 역사』 제1호, 도서출판 각, 2001, pp.183-201.

이로 인해 제주4·3사건 이후 진상규명 과정에서 그 중요성이 커진 것은 바로 제주도민들의 사건 당시 기억을 기록한 구술 기록물이다. 사건의 특성상 구술 기록물이 많이 필요했고 그 중요성도 컸다는 것도 또 하나의 특징이다.

2. 등재 대상 범주 설정

제주4·3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서 등재 대상 기록물의 범주를 설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관련된 모든 기록을 확인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관련 기록은 계속 생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의미를 시시각각으로 파악하여 정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더군다나, 이후에 필요한 동의 절차와 기록 수집 및 관리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1차적으로 기록물의 범주를 만들어 정리하는 작업을 통해 등재 대상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기록물을 재분류하고 설정된 범주를 조정하는 반복을 하면서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될 제주4·3기록물의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등재 대상의 범주를 다음과 같이 미군정 기록물, 정부 및 군·경 기록물, 무장대 기록물, 피해조사 기록물, 구술 기록물로 나누어서 설정하려고 한다. 미군정 기록물, 정부 및 군·경 기록물, 무장대 기록물은 기록의 생산 주체를 기준으로 설정한 기록물의 범주이며, 피해조사 기록물은 기록물의 내용을 중심으로, 구술 기록물은 생산되는 특성과 결과물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앞서 제주도가 제시한 4·3희생자 판결문 기록은 사실상 군·경 기록물에 속하기에 이를 조정했고, 제주4·3기록물의 특성상 중요한 것은 바로 제주 사람들의 증언을 기록한 구술 기록물이므로 이를 포함하였다. 제주4·3기록물이 가지는 가치는 진상 규명 과정에서 나타나고 과거사 정리의 모범사례로 이해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피해조사기록도 범주에 설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제주4·3기록물을 생산한 주체와 그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고 기존의 연구자에 의해 연구된 기록물을 사례로 확인하여 그 의미와 중요성을 파악하려 한다.

1) 미 군정 기록물

미 군정 기록물의 생산 주체로서 제주도에서 미군의 공식 업무는 1945년 9월 28일 오전 8시부로 개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45년 9월 28일 오전 8시 24군단 병기 장교를 선봉으로 해서 무장해제팀이 제주항에 도착하였고, 같은 날 오전 9시 184보병연대 항복접수팀이 제주서비행장(현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하였기 때문이다.⁴²⁾ 제주4·3사건 당시 미 군정은 군사점령 형태로 수립된 군정으로서 성격과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는데, 해방 이후 한국의 특수한 역사적 상황에서 사실상의 통치권 담당자로서 책임과 권한을 보유하였다.⁴³⁾ 제주도에서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역에서 미 군정은 전국적으로 거미줄처럼 촘촘한 정보망을 구축하였다. 군 기관이라는 조직 체계를 활용하여 전국적인 범위에서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정보를 수집·관리·활용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었다.⁴⁴⁾ 따라서 당시 미 군정에 의해 생산된 각종 정기적인 정보자료 및 보고서 및 문서들은 제주4·3사건 당시 중요한 기록물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래의 표는 제주4·3사건 당시 미 군정이 수집해온 기록과 그 기록의 생산 기관이다. 미 군정 기록물에서 주목할 점 중 하나는 바로 기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와 제공되는 정보의 정도를 구분하여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기술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도 있다. 이를 통해 미 군정이 정보 수집과 분석에 관해서 매우 치밀하고 체계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미군 통신부대에 의해 생산된 무성 기록영화 메이데이가 있다. 메이데이는 제주4·3사건에서 진압 작전 정책에 변화로서 토벌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료를 제공해주는 기록물이라고 할 수 있다.⁴⁵⁾ 미 군정청 특별 감찰실 로렌스 넬슨 (Lawrence Nelson) 중령에 의해 작성된 보고서는 당시 류해진 제주도지사의 전횡에 대한 감찰내용이 주를 이루었고, 이 과정에서 수집 및 작성된 기록에서 제주4·3사건의 원인을 밝혀낼 수 있는 중요한 대목들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⁴⁶⁾

42) 제주4·3위원회, 앞의 보고서, pp.64-66.

43) 이춘선, “해방 직후 미군정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한국의 국가성과 제주4·3사건을 중심으로”,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제62권 제2호, 2017, p.197.

44) 정용욱, 앞의 논문, pp.187-188.

45) 양조훈, 앞의 책, pp.40-49.

46) 김창후, “넬슨 특별감찰보고서: 제주도의 정치 상황에 나타난 제주도지사 유해진”, 제주학회, 『제주도연구』 제17집, 2000, pp.95-120.

로스웰 브라운(Rothwell Brown) 대령의 보고서는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한 심문에서 얻어진 제주도 관련 정보를 담고 있다.⁴⁷⁾ 주한미육군사령부 소속에는 편제 단위로 군단·사단·연대·중대까지 다양한 조직이 있었지만 기록물의 방대성·정확성을 고려한다면 주한미육군사령부 정보참모부의 ‘일일 정보일지’와 ‘주간 정보 요약’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주한미군 철수 이후 주한미군사고문단이 주둔하면서 군사에 관한 조언을 하였는데, 등재 대상 범주의 예시로서 한국 정부의 군 관계자와 공람 및 경유 하며 주고받은 서한에는 제주4·3사건 당시 수많은 희생을 낳게 하였던 송요찬 연대장에 대한 훈장 수여와 그에 공적에 대한 긍정적 성명을 발표하라는 내용을 담은 기록이 있다.⁴⁸⁾

<표 3> 미 군정 기록물 예시

생산 주체	생산 기록	기록 내용	비고
미군 통신부대	메이데이	오라리 방화사건	48.5.1~5.5
주한미육군사령부 군정청	넬슨 중령 감찰 보고서	류해진 도지사 전횡	47.11.12~48.2.28
”	브라운 대령 조사 보고서	남로당 성공 및 선거 거부 요인, 폭동 진압 대책	48.5.22~6.30
주한미육군사령부 정보참모부	일일 정보일지	우편 검열, 민간인 소요, 폭도 활동, 토벌 작전	45.9.9~49.6.17
”	주간 정보 요약	일본군 철수, 민간인 소요, 경비대 활동, 게릴라 활동	45.9.9~48.11.26
주한미군사고문단	서한철	이승만 대통령 성명 발표 추천, 송요찬 중령 훈장 수여 약속	48.12.18, 48.12.21

자료: 김창후(2000·2001), 정용욱(2001), 제주4·3아카이브를 토대로 필자가 재작성⁴⁹⁾

2) 정부 및 군·경 기록물

제주4·3사건은 1948년 4월 3일 미 군정 시기에 발생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희생을 낳았던 기간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의 시기이다.

47) 브라운 대령 보고서의 내용과 일자 및 소장처가 자료 3에 동봉된 자료로 나온다. 김창후, “4·3진상조사보고서 작성과 미국자료”, 제주4·3연구소, 『4·3과 역사』 제1호, 도서출판 각, 2001, pp.93-98.

48) 김창후, 위의 논문, pp.98-100.

49) 정용욱, 앞의 논문, pp.188-190; 김창후, 위의 논문, pp.71-73.

미 군정 시기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거쳐 군조직은 ‘조선국방경비대’에서 ‘조선경비대’ 그리고 ‘국군’으로 변경되었다.⁵⁰⁾ 경찰은 ‘미군정 경무부’에서 정부 수립 이후 ‘내무부 치안국’ 산하로 지위가 격하되었다.⁵¹⁾ 제주4·3사건의 발발 과정에 영향을 미친 조직은 ‘경찰’이었다. 그 후 진압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희생을 유발한 조직은 ‘군대’였다.

정부 수립 이후 시기 중 1948년 11월부터 1949년 4월까지의 시기에 제주4·3사건 전체 희생자 중 약 80%가 희생되었다.⁵²⁾ 이렇게 단기간에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원인은 계엄령 때문이었다. 제주4·3사건 당시에 이를 증명해주는 계엄령 문서는 국무회의를 거쳐 의결되었고, 계엄의 선포와 해제가 각각 관보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계엄령 문서, 관보, 국무회의록 등은 군·경 기록이 아닌 사실상 정부의 기록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모든 기관이 제주4·3사건 당시 진압 업무를 수행한 것은 아니며, 위의 기록은 군·경이 제주4·3사건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근거가 되는 문서였다. 따라서 군·경 기록에 이를 추가하여 연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제주4·3사건 당시 이러한 정부 및 군·경의 기록은 행형기록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행형기록’이란 어떤 행위가 범죄로 인정·처벌·교화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특정 사람의 행위가 범죄로 간주 되어 피의자로 제기되고 그것이 형사사건으로 진행되어 경찰에서 검찰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사법부의 판결을 받고 처리되는 과정에서 생산된 문서를 말한다.⁵³⁾ 이러한 개념에 근거하여 제주4·3사건 당시 생산된 군·경 기록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군에 관한 활동 기록으로 2연대 제주도 주둔기가 있다. 앨범 형태의 이 사진첩에는 제주 4·3사건 당시 주력 진압부대였던 2연대가 활동한 내용이 사진과 짤막한 글 형태로 남겨져 있다. 제주4·3사건 당시 진압의 책임자로 국방경비대 9연대 장이었던 김익렬은 사후에 남긴 기록들이 존재한다. 하나는 그가 제주4·3사건이 지나지 얼마 않아 국제 신문에 기고한 기고문이며, 다른 하나는 김익렬 장군이 ‘4·3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실록 유고가 있다.

50) 김득중,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의 법·역사적 접근: ‘국방경비법’을 중심으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아세아연구』 제53권 4호, 2010, p.11

51) 강혜경, 「한국 경찰의 형성과 성격(1946-1953)」,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2, pp.95-96.

52) 제주4·3위원회, 앞의 보고서, p.538.

53) 시귀선, “해방이후 행형기록 소개”, 국가기록원, 『소장자료』, pp.197-208.

경찰 관서의 수집자료로서 경찰기록에는 첫째, 도표 및 빼라 관련 문서, 둘째, 사진 자료, 셋째, 경찰 관서 작성 문서 등이 있다. 즉 경찰의 활동 과정에서 노획 및 압수하게 된 시각적 문서, 그들이 찍은 사진, 자체적으로 작성한 문서로 나뉠 수 있다.⁵⁴⁾

〈표 4〉 정부 및 군·경 기록물 예시

생산 주체	생산 기록	기록 내용	비고
총무처 법무담당관	관보 제14호	계엄령 선포(대통령령 제31호)	48.11.17
"	관보 제26호	계엄령 해제(대통령령 제43호)	48.12.31
총무처	제12회 국무회의록	이승만 대통령 지시사항 , 제주도 특별소탕 경찰대 파견	49.1.21
제주지방 검찰청	수형인명부	군법회의에 회부 대상자 인적 사항, 형 집행 상황, 적용 법령	48.12~49.7
제2연대	제2연대 제주도 주둔기	폭도(暴徒) 가강(假裝) 활동, 2연대 활동	49.8.15
김익렬	김익렬 장군 실록 유고: 4·3의 진실	제주4·3사건의 원인, 전개, 주요 사건	47.9~48.5 (복무)
"	국제 신문 기고문	4·28 회담	48.8.6~8.8 (개재)
경찰 관서* ⁵⁵⁾	제주도3·1기념투쟁 준비위원회 파업폭동습격사건체계도(1947) , 남로당 전남도위원회 조직표(1948), 형살자 및 가족 명부(1949), 한림면당부 조직표(1950), 한라산 잔비 체계도(1951), 재산 잔비 군사 체계에 관한 문서 (1953)		47.3~54.9

자료: 김동전(2013), 박찬식(2008), 국가기록원 홈페이지를 토대로 필자가 재작성⁵⁶⁾

54) 김동전, “제주4·3역사자료의 수집 현황과 과제”,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제주4·3연구의 새로운 모색』, 제주대학교 출판부, 2013, pp.111-134.

55) 경찰 관서의 생산 기록과 기록 내용을 합친 이유는 특성상 기록 자체에서 기록 내용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작성되었기에 이를 감안하여, 생산 기록과 기록 내용을 묶어서 같은 칸에 기록해두었다.

56)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서 “제주4·3사건”검색 후 기록물 현황을 내려받아 일자 혹은 명칭을 재확인하였다.(검색일:2019.05.30).

3) 무장대 기록물

무장대라는 명칭은 제주4·3사건 당시 주요 행위자로서 남로당 제주도당 소속 일부 무장인원을 말한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당원들에 의한 기록뿐만 아니라 제주4·3사건의 도화선이라 불리는 3·1사건 당시 주최 당사자였던 민주주의 민족전선 간부와 남로당 제주도위원회를 모두 포함한다. 사실상 제주 민전, 남로당 제주도당과 그 중 무장대는 지칭하는 대상에서 조금의 차이를 보이긴 하지만 이들을 구성하는 세력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에서는 통칭하여 시기의 연속성과 대상의 유사성을 고려해 무장대 기록물로 지칭하려고 한다.⁵⁷⁾

무장대 기록물에는 당시 남로당 대정면 책임자였던 이운방의 ‘3·1사건 회고록’이 있다. 구억리 회담에 관하여 김익렬의 주장을 배격한다는 내용, 한 선거투쟁 참여자의 증언을 토대로 제주도의 남조선 과도입법의원 선거투쟁에 관한 내용 등을 기록하고 있다. 경찰이 민청 조천면 의장이었던 김완배에게서 압수한 자료로서 ‘3·1기념 행사의 진상 보고’가 있다. 당시 포고령 위반 혐의자로서 압수품 제23호이다. 이 기록에서는 3·1 기념행사 참가한 인원의 수·단체 현황·동원 인원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제주도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는 1949년 무장대 총사령관 이덕구 사살과정에서 경찰에서 노획한 문서를 필사본으로 빼껴 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윤식(2006)은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제주4·3사건 이후 무장대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점, 무장대 관련 활동 자료로서 현재까지 유일하다는 점, 상당 부분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 신뢰성이 있다는 점으로 이 기록의 중요성을 설명하였다.

제주도인민들의 4·3무장투쟁사는 연구서라기보다는 기록 증언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당시 제주4·3사건에 지도부의 역할을 행하였던 자의 시각에서 쓰인 기록이라 볼 수 있다.⁵⁸⁾ 유의해야 할 점은 일부 사실관계 면에서 과장된 측면들이 많아 이에 대한 확인이 올바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⁵⁹⁾

57) 양정심, “제주4·3항쟁에 관한 연구: 남로당 제주도위원회를 중심으로”, 수선사학회, 『사림』 제11권, pp.3-30.

58) 박찬식, “제주4·3사건 당시 대중운동과 무장투쟁”, 한국근현대사학회, 『한국근현대사연구』 제84권, 2018, pp.251-285.

59) 양조훈, 앞의 책, pp.103-104.

앞서 설명한 무장대에 의해 생산된 것으로 확인되는 기록들은 아래의 표 5의 내용과 같다.

<표 5> 무장대 기록물 예시

생산 주체	생산 기록	기록 내용	비고
이운방	3·1사건 회고록	구억리 회담, 남조선 과도입법의원선거투쟁	남로당 대정면당 책임자
남로당 제주도위원회	3·1기념행사의 진상보고	3·1기념 행사 참여 인원 및 동원 내역	김완배 소지
"	제주도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	조직·작전·투쟁·국경과의 관계	필사본
김봉현·김민주	제주도인민들의 4·3 무장투쟁사	일본으로 건너간 4·3 관련자 증언 토대로 집필	무장대 참여자의 경험

자료: 김동전(2013), 장윤식(2006), 제주4·3평화공원 방문을 토대로 필자가 재작성

4) 피해조사 기록물

제주4·3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일 중 가장 중요했던 것 중의 하나는 피해기록의 확보이다. 제주4·3사건 관련 각종 피해조사 기록물은 크게 국회 양민학살 보고서, 제주도의회 4·3피해 보고서, 제주4·3위원회 피해조사와 같은 공적인 기관에서 수행한 피해조사기록 들 수 있다. 또한 제주신보·토산리·북촌리라는 언론과 마을 자생 단체에 의해 수집되고 접수 및 작성된 피해조사기록물도 존재한다.

1960년 4·19혁명 이후 비로소 제주4·3사건에 대한 구체적 진술이 가능하게 되는데 이때 진상규명에 앞장섰던 언론이 바로 『제주신보』였다. 제주신보는 4·19혁명 이후 민주화에 대한 열망과 함께 과거 민간인 학살에 대한 진상 요구가 국회에서 진행될 때 제주에서도 피해조사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사고(社告)를 통해 피해를 조사·접수하는 역할을 수행했다.⁶⁰⁾ 이를 근거로 제출된 보고서가 바로 국회 양민학살 조사서이다. 당시 제주 지역 현경대 국회의원이 국회도서관에서 발굴한 것을 토대로 제주4·3연구소가 국회의 협조를 거쳐 국회도서관에서 복사한 내용으로 『국회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보고서 I·II』를 펴냈다. 이는 기록의 발굴을 단순히 사실 확인에 그치지 않고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연구자들이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⁶¹⁾

60) 양조훈, 앞의 책, pp.17-18.

61)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 70주년 어둠에서 빛으로』, 하나CNC, 2017, p.219.

지방의회 차원에서 제주도의회는 본격적인 피해조사를 실시 하겠다는 방침으로 1994년을 ‘4·3 기초조사의 해’로 선포하는 의장 명의의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하나씩 추진해 나가기 시작했다. 우선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4·3 문제에 자문을 얻음으로써 보다 합리적 방법으로 4·3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내용이 집대성된 것이 1995년 도의회 피해조사보고서이다.⁶²⁾ 14,125명의 희생자 명단을 기재한 제주도 4·3 피해 조사 1차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그 후 이를 수정·보완판을 편찬하였다.

피해 조사기록물에서 주목할 기록물은 바로 토산리와 북촌리 마을에서 자체 조사 및 작성한 실상기와 조사서이다. 토산리에서는 1987년 1948년 12월 15일에 18세에서 40세의 젊은 청년과 여성 150명을 끌고 가 집단 학살한 사건에 대해서 마을 차원에서 ‘토산리 실상기’라는 기록을 남겨두었다. 북촌리의 경우 제주4·3사건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인 1993년 1차 조사에서는 6개월의 기간 동안 지적도(地籍圖)까지 확인해가며 조사결과 426명의 사망자 명단을 확인하였다. 1994년 2차 조사에서는 희생자가 479명으로 조사되어 있다. 너븐승이 기념관 바로 옆 북촌리 위령비에는 443위의 희생자가 각명되어 있다. 너븐승이 기념관 내부의 전시 패널에서는 이 숫자는 계속 유동적임을 명시하고 있다.⁶³⁾

〈표 6〉 피해조사 기록물 예시

접수 주체	생산 기록	피해 현황	비고
제주신보	4·3사건 및 6·25 당시 양민학살 진상규명 신고서	피해 건수 1,259건/ 인명 피해 1,457명	1960
국회	양민학살 진상규명 신고서	희생자 1,917명	1960
토산리	4·3사건 실상기	48년 12월 15일 피해자 150명	1987
북촌리 월로회	북촌리4·3사건피해조사서	426명, 479명	1993
제주도의회	제주도 4·3 피해조사 1차 보고서	14,125명	1995
제주4·3위원회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심의·결정요청서	희생자 15,095명에 대한 신고서	2001

자료: 양조훈(2015), 제주4·3평화재단(2018), 너븐승이 기념관 방문을 토대로 필자가 재작성

62) 양조훈, 앞의 책, pp.131-138.

63) 너븐승이 4·3기념관 기념관 내부의 ‘북촌리의 진상규명 운동’ 섹션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5) 구술 기록물

제주4·3기록물을 구성하는 구술 기록물 역시 중요하다. 최근 역사 연구에서 구술사(Oral History)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 되고 있는데, 특히 제주4·3사건처럼 관련 기록이나 문서가 부족할 경우 진상규명을 위해서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작업의 하나가 바로 관련자들의 증언을 채록하여 구술 기록물을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⁶⁴⁾ 구술 기록물은 서로 연관되어서 두드러지는 특성이 존재하는데 바로 구술성·주관성 및 개인성·공동작업·유일성·활용의 유동성과 민감성이다.⁶⁵⁾ 제주4·3사건 당시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사건 이후 진상규명의 과정에서 제주4·3사건을 겪은 다양한 체험자들의 구술 기록물은 위에서 살펴본 구술기록의 특성에 유의할 때, ‘기록의 부재’와 ‘기억의 왜곡’으로 인해 제주4·3사건의 진상규명을 어렵게 하는 요인을 밝혀줄 제주도민의 기억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별법 제정 전후로 각종 기관이나 단체의 의해 수집된 구술 기록물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제민일보의 ‘4·3은 말한다.’는 총 5권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5권 모두 일본어판으로도 출간되었다. 과거의 구술기록물이 개인적 차원에서 문학적 창작을 위한 소재로 사용되거나, 집단적 차원으로 이루어지더라도 구술 대상에 관한 정보가 누락 되어있었음을 감안한다면 이 기록물은 규모와 기간 그리고 내용의 신뢰성에서 매우 의미가 있으며 이에 따라 학술적 가치도 크다고 판단된다.⁶⁶⁾

MBC 증언 영상은 107회에 걸쳐서 510명이 참여하였다. 언론에 의한 구술기록물의 이용과 보관은 제주4·3기록물의 다른 기관에 의한 구술 기록물보다 좀 더 이용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 자체가 이미 방송이 된 사항이고, 방송을 통해 널리 알려지기를 목적으로 제작되었다는 점에서 기록의 이용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제도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⁶⁷⁾

64) 정용욱, 앞의 논문, p.186.

65) 조용성, “구술사와 구술기록”, 『구술기록 관리 방법론 연구』, 한국외대 기록학연구센터, 도서출판 더 로드, 2015 , pp.34-38; 한국기록학회, 앞의 책, p.32.

66) 박찬식, 앞의 책, pp.397-398.

67) 김동전, 앞의 글, pp.130-131.

제주4·3위원회의 증언 영상은 지금까지의 구술 채록과 달리 정부 차원에서 이뤄지게 되었다. 따라서 구술 채록과 구술 자료 제작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가 되어 있었다. 우선 기본적으로 녹음과 녹화를 원칙으로 하였다. 또한 기존의 구술 기록물을 토대로 사전의 2,500명이 넘는 대상자를 자체 선정하여 구술 채록 대상자의 신중함을 기했다는 점도 있다.⁶⁸⁾

1,000인 증언 채록 사업은 제주도가 지원하고 제주4·3연구소가 수행하는 형태로 구술을 채록하였다. 지금까지의 구술 채록이 약 500명 가량의 인원이 참여했다면 그 규모면에서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서 이해 될 수 있다. 다만 유념해야 할 점은 단지 구술 참여자의 숫자의 증가가 아니라, 다른 구술 사업의 참여자와 중복되지는 않는지 혹은 중복되더라도 그에 따라 진술의 일관성이나 사실 관계까지 변동하여 그 구술 내용의 신빙성이 확보되는지를 계속해서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⁶⁹⁾

<표 7> 구술 기록물 예시

생산 주체	생산 기록	기록 내용(구술 인원 및 자료 규모)	비고
제민일보	4·3은 말한다	1,000명 이상, 5권	1994년~1998년, 지방신문사, 출처공개
제주MBC	증언 영상	510명, 107회 방송분	1999년~2001년, 지역방송사, 읍면별 분류
제주4·3위원회	증언 영상	503명, 7권 자료집(2,958쪽 분량)	2001년 7월~2002년 10월 ,내부 자료로 비공개
제주도, 제주4·3연구소	1,000인 증언채록사업	1,028명, 증언채록 자료집 60권(미발간)	2004년 3월~2008년 12월

자료: 김동전(2013)을 토대로 필자가 재작성

3. 제주4·3기록물의 문화유산적 가치

제주4·3기록물 중 세계기록유산 등재 대상 범주로 설정한 기록물의 문화유산적 가치를 검토 및 종합하여 파악하고 정리해보겠다.

미 군정 기록물은 제주4·3사건 당시 미군이 수집하고 정리한 기록을 토대로 작성한 각종 보고서 및 정보일지와 문서류 및 영상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68) 제주4·3위원회, 앞의 보고서, pp.51-55.

69) 김동전, 앞의 글, pp.129-130.

이 기록물은 미 군정이 제주4·3사건과 관련한 행위에 대한 책임 문제와 직접 연결된다. 국제법학자들은 미 군정의 성격과 제주4·3사건 당시의 미국의 지위와 역할 그리고 책임에 관한 연구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미 군정 기록은 이에 관한 국제법적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연구자료가 되므로 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국가에 의한 폭력의 특수성은 국가가 물리적 폭력과 제도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기록의 생산·조작·파괴의 가능성을 가진 집단이라는 점에서 나온다. 제주4·3사건 당시와 같이 사실상 정부가 없었을 경우 ‘점령’의 형식으로 통치를 했던 미군의 기록들은 매우 중요한 자료이며, 사건 당시의 사회적 상황을 파악할 자료로도 쓰일 수 있다.

정부 및 군·경 기록물은 제주4·3사건 진행 중에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와 관계된 기록으로서 진압의 중심이 되었던 군·경 기록을 포함하여 말한다. 오승진 (2016)에 따르면, 제주4·3사건에서 민간인 살해 등 제노사이드를 행한 부대는 외견상으로 한국군이었으므로 그 행위는 적어도 한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는 이에 귀속된다고 할 수 있다.⁷⁰⁾ 따라서 한국 정부가 생산하고 보관 중인 기록물들은 제주4·3사건에서 일어난 민간인 피해에 대한 증거로서 기능할 수 있다. 그 중 제주4·3사건 관련 형사판결문과 약식명령은 내용이 비교적 풍부하며 어떤 자료에도 남아 있지 않은 기록으로서 4·3 당시 투쟁과 무장봉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인적 사항과 활동 내용 등이 담겨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⁷¹⁾

무장대 기록물은 제주4·3사건에 있어서 중요한 행위자였던 남로당 제주도당 의해 생산된 기록을 말한다. 장윤식(2006)에 따르면, 제주4·3사건 당시 무장대와 진압대라는 물리적 폭력의 대결 구도가 존재했었고, 무력충돌과정과 진압과정에서 많은 주민이 희생당했다는 사실이 특별법에서도 정의되어 있고, 결과적으로 제주도민의 희생을 가져 온 사건의 충돌 당사자 중 한 행위자인 무장대가 어떻게 조직되고 활동했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제주4·3사건의 발발 원인과 전개 및 사건 결과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기록물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⁷²⁾ 따라서 무장대의 기록은 과거의 역사적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돋는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

70) 오승진, “국제법상 제노사이드 금지와 국가의 책임: 제주 4·3사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중심으로”,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제61권 4호, 2016, pp.134-135.

71) 박찬식, “한국전쟁기 제주4·3관련 수형인 학살의 실상: 수형인명부를 중심으로” 『4·3과 역사』 제1호, 도서출판 각, 2001, pp.17-49.

72) 장윤식, 「제주4·3사건 초기 ‘무장대’의 조직과 활동: 제주도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의 분석」, 제주 대 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6.

각종 피해조사 기록물은 그동안 억제되었던 제주4·3사건의 당사자들로부터 피해 사실을 알릴 수 있게 해준 기록물이다. 이 피해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이 규명될 수 있었으며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초적 자료가 되었다. 특히 1960년 4·19혁명 직후 제주4·3사건에 피해의 경우 그 후 억압적인 정권을 거치면서 잠시 잊혀질 뻔하였으나 기록의 발굴과 이에 대한 후속 연구 및 관련 진상 규명 활동을 통해 다시 그 의미와 가치가 살아나게 되었다. 이어서 지방의회 차원에서 제주도의회가 제주4·3피해에 대해 조사할 수 있었던 근간이 되었다. 이러한 지역에서의 진상규명의 노력이 결실로 나타난 것이 바로 4·3특별법이다. 이 법에 의해 구성된 위원회가 이에 근거한 진상조사를 통해 발간한 진상조사보고서는 제주4·3사건의 진상규명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제주4·3위원회에 의해 수집되어온 기록들을 통해 위원회가 건의한 대정부 7대 건의안은 사실상 모두 수용되었다. 한국 근현대사에서 과거 국가 잘못에 대해 국가 원수가 사과한 일은 제주4·3사건의 경우가 처음이었다. 대통령의 공식 사과는 특별법 제정과 진상 조사보고서가 만들어낸 가장 중요한 상징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과가 가능한 진상규명에 기여한 제주4·3기록물은 대한민국이 인권 국가로 거듭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상징적 가치’를 가진다.

구술 기록물은 제주4·3사건 당시 체험자와 유가족에게서 제주4·3사건의 아픔과 상처를 씻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증언자는 말을 하는 행위를 통해 스스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으며, 자기 자신을 존중하거나 자기를 재발견하는 기회를 갖기도 한다.⁷³⁾ 앞서 말했듯이 구술기록은 공동의 작업이므로 구술 채록자에게도 의미와 가치가 있다. 따라서 구술 채록자가 연구하고 정리한 구술 기록물은 역사적 가치와 학술적 가치를 가진다. 염미경(2015)에 따르면, 구술 기록물은 근현대사 연구와 지방 사회 연구에서 활용도가 매우 큰 자료라고 할 수 있다.⁷⁴⁾ 연구자료로서의 가치, 추가 진상조사와 연구의 필요성에 중대에 따른 연구를 위한 중요한 자료라고 하며, 생활사의 연구자료로도 쓰일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구술 기록물은 역사적 가치와 다양한 학술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73) 김은희, “4·3증언조사의 성과와 향후 과제:1000인 증언채록집 추진사례를 중심으로”, 제주4·3연구소, 『4·3과 역사』 제15호, 도서출판 각, 2015, pp.45-54.

74) 염미경, “4·3증언조사의 성과와 향후 과제:1000인 증언채록집 추진사례를 중심으로”, 제주4·3연구소, 『4·3과 역사』 제15호, 도서출판 각, 2015, pp.83-86.

지금까지 제주4·3기록물의 개념과 현황 및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제주4·3기록물의 문화유산적 가치를 잘 드러나게 할 기록물의 범주를 설정하였다. 그 범주에 따른 가치를 파악한 후 종합적이며 전체적인 관점에서 제주4·3기록물이 가지는 문화유산적 가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4·3기록물은 ‘역사적 가치’를 가진다. 미 군정 기록물은 해외소재 한국관련 역사기록물로서 냉전의 구도가 한반도를 통해 제주 지역으로 영향을 미치는 역사적 과정을 살펴볼 수 있게 해준다. 정부 및 군·경 기록물은 행형기록으로서 국가폭력의 역사를 확인하게 해준다. 무장대 기록물은 제주4·3사건의 도화선이 된 3·1 발포사건과 3·10 총파업과 관련된 저항의 역사를 보여 준다. 각종 피해조사 기록은 폭력에 의해 제주도민이 입은 인명 희생과 재산 상실이라는 과거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여 준다. 구술 기록물은 제주 도민의 기억의 역사를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입장에서의 기록화하여 과거의 사실을 복원하고 재현하는데 기여 한다. 세계사적으로 냉전의 구도와 국내적으로 분단의 역사가 성립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시기에 발생한 근현대사 사건인 제주4·3사건 당시의 기록과 그 이후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활동에서 생산된 기록물은 냉전의 역사, 한국 근현대사, 한국의 민주주의 이행과 공고화라는 역사적 시기와 변화의 모습을 보여준다.

둘째, 제주4·3기록물은 ‘학술적 가치’를 가진다. 미 군정 기록물은 지역과 국가를 넘어 대륙적 차원의 세계사적 냉전의 연구, 국제인권법 측면과 미국의 대아시아정책, 대한정책, 대제주도정책에 대해 연구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준다. 군·경 기록물은 국가폭력이 어떠한 제도와 구조를 통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연구 자료로서 정치학과 사회학 등의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된다. 사건의 진상규명과 지휘책임에 대한 분석의 연구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무장대 기록은 제주4·3사건이 왜 발생했고, 어떻게 진행되어갔는지에 대한 연구에 자료로 쓰일 수 있다. 이들이 당시 정치적 상황에 대해 가진 생각은 무엇인지에 관한 연구에 주제가 된다. 각종 피해조사 기록은 이를 통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되는 배상과 보상에 관한 근거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과거사 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정확한 피해의 조사는 출발점이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러한 연구에 있어서 토대가 되는 기록이다. 구술 기록물은 그 자체로서 독립된 연구대상이 될 수 있기도 하고,

구술 기록물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언어 등 다양한 요소를 통해 지역사회 연구의 학술적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제주4·3기록물은 그 범주에 따라 다양한 학문에서 연구의 자료로 쓰일 수 있다. 또한 추가 진상조사 시에 우선으로 재확인되어야 할 기초자료라고 할 수 있기에 학술적 가치가 있다 할 수 있다.

셋째, 제주4·3기록물은 ‘상징적 가치’를 가진다. 미군정 기록을 통해 제주4·3기록물은 냉전의 시기에 군사·전략적으로 중요한 제주도라는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기록물이라는 상징적 가치를 확보한다. 군·경기록물을 통해 제주4·3기록물이 근대 국민 국가 형성 시기 민간인 학살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무장대 기록물을 통해 무장대의 저항과 단독선거 및 단독정부를 거부했음을 통해 분단에 반대하였고, 이 과정에서 5·10선거에서 유일하게 투표가 실시되지 못한 지역이라는 상징적 가치를 가진다.⁷⁵⁾ 각종 피해 조사 기록은 제주4·3기록물이 과거에 벌어진 인권 침해에 대한 사실 확인이라는 점을 통해 대한민국이 인권국가로 거듭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제주4·3기록물은 폭력과 갈등이라는 ‘과거의 역사’를 통해 평화와 인권 그리고 통일라는 ‘미래의 가치’로 승화시키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화해와 상생’이라는 주제를 구현하고 있다.⁷⁶⁾

제주도민은 과거의 피해를 극복하고 공적 인정 단계를 거쳐 지금에 이르렀다. 그러한 차원에서 제주는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되었다.⁷⁷⁾ 증가하는 제주4·3평화공원 방문객 수⁷⁸⁾와 제주4·3사건에 대한 관심은 제주4·3기록물이 평화와 인권의 상징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제2장에서 제주4·3기록물의 문화유산적 가치를 파악해 본 결과, 역사적·학술적·상징적 가치가 확보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제주4·3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은 문화유산의 관점에서 그 필요성이 확인되었다고 판단된다.

75) 여기에서는 5·10선거에 대한 정당성과 이에 대한 평가를 논하는 것이 아니다. 제주4·3사건과 관련되어 5·10선거 지역구 3개 중 2개의 지역구에서 투표가 투표율 미달로 무효가 된 유일한 지역이라는 ‘상징성’을 가진다는 점을 말하려고 한다.

76) 제주4·3평화공원 기념관의 출구에는 “제주4·3사건은 평화·인권·통일의 상징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혀져 있다. 또한 제주4·3평화재단에서 발행되는 다양한 간행물을 통해 제주4·3의 가치는 ‘화해와 상생’임을 제시하고 있다.

77) 제주도 홈페이지 상단 제주 소개 메뉴에서 세계평화의 섬 제주 메뉴 클릭(검색일:2019.05.30)

78) 제주4·3평화재단 보도자료(2018.11.10)“제주4·3평화공원 방문객 40만 돌파”(검색일:2019.05.30).

III. 세계기록유산 사업을 통해 본 제주4·3기록물

1. 세계기록유산 사업의 배경 및 목적

1) 세계기록유산 사업의 배경

세계기록유산 사업의 배경에는 제도적 배경과 역사적 배경이 있다. 제도적 배경은 세계기록유산 사업이 시작되고 운영되어 유지될 수 있게 해 주는 법·제도적 근거라 할 수 있으며, 역사적 배경은 세계기록유산 사업의 시작에 영향을 미쳤던 중요한 역사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제도적 배경과 관련하여 세계유산의 근거와 조직 및 체계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유네스코(UNESCO)의 다양한 업무 중 문화와 관련된 분야에서 시행하는 대표적 사업이 세계유산이라 할 수 있다.⁷⁹⁾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세계유산은 각각의 제도적 근거와 이를 위한 조직과 체계에 따라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세계기록유산으로 나눌 수 있다. 세계유산은 1972년 세계유산협약, 인류무형문화유산은 2003년 인류무형문화유산협약에 근거해 유산으로 지정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협약 사업의 장점은 가입한 당사국들에 법적 의무와 권리를 부여한다는 점과 협약을 통해 맺어진 내용에 대한 구속력이 체계적이고 권위적으로 보장된다는 점에 있다. 등재를 위한 심사 기구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록유산의 등재를 최종 결정 짓는 주체도 유산별로 다르며, 구체적 사업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부서도 별도로 존재한다는 차이점도 있다. 세계기록유산은 협약에 따라 선정되는 유산이 아니라 프로그램 사업으로서 유네스코 정보사회국 커뮤니케이션, 정보지식국 소관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조직과 운영 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다. 앞에서 정리한 유네스코 문화유산 프로그램의 시행 근거 및 운영조식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79) 국제연합(United Nations) 산하의 국제기구로서 1945년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직후에 세계의 평화와 인류 발전을 위해 탄생하였다. 유네스코의 사명은 이를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 교육·과학·문화·정보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촉진하는 것이다. 유네스코의 사명과 유네스코 창설 배경에 관한 설명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였다.(검색일:2019.05.12).

〈표 8〉 세계유산 시행 근거 및 운영 조직

구 분	세계기록유산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시행 근거	기록유산보호일반지침 (1995)	세계문화및자연유산보호협약 (1972)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2003)
사업 성격	일반 사업	협약 사업	협약 사업
심사 기구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IAC)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별도 심사 기구
최종 결정 권한	유네스코 사무총장	세계유산위원회	무형유산 정부간위원회
담당 부서	지식사회국	세계유산센터	창의국

자료: 김귀배(2016)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필자가 재작성.

세계기록유산 사업의 역사적 배경으로 몇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 1933년 독일 베를린 오페라 광장에서 나치에 의하여 약 2만 5천 권의 도서가 불태워졌다. 이 중에는 세계적 문학가인 프란체 카프카(Franz Kafka), 과학자 알버트 아이슈타인(Albert Einstein), 심리학자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의 책도 포함되어 있었다. 세계기록유산 사업의 시작을 알면 앞두던 1992년에는 보스니아 사라예보에 있는 국립도서관에서 무려 150만 권의 장서가 불에 타버렸다. 내전에 의해서 도서관이 폭격을 맞게 된 것이다. 이 중 14만 권이 넘는 희귀본과 필사본이 소실되었다.⁸⁰⁾

기록유산의 소실 사례는 기록유산이 다양한 인간활동에 의해 파괴되고 없어질 수 있다는 역사적 교훈을 주었다. 이러한 역사적 사례의 교훈과 기록유산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보호되거나 알려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배경이 되어 탄생한 것이 바로 ‘세계기록유산 사업’이다. 세계기록유산사업에 의의는 세계 곳곳에 분포하고 있는 인류의 기억들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주며 미래를 열어 가는데 결정적 중요성을 갖고 있는 것이며 이를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점이다.⁸¹⁾ 세계기록유산 사업의 배경을 제주4·3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과 연관 지어 논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4·3기록물을 하나의 총체적 유산으로 인식하고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하기 위한 내용과 방법을 찾는 데에 있다.

80) 이선경. “기억을 함께 나눈다는 건, 미래를 함께 만든다는 것”, 유네스코 홈페이지에서 검색(검색일:2019.05.12).

81) 유네스코, 앞의 책, p.5.

이는 제주 사회의 문화적 유산과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소일 수 있으며 단지 지역사회의 통합과 유지라는 관점을 넘어서 인류 공동 사회에서 중요성을 가진다. 인간을 사회적 존재로 만들어주는 힘은 기억과 기록에 있으며, 이 기억과 기록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기록유산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부당한 외부세력에 대한 저항의 전통’이라는 ‘제주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인하고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2) 세계기록유산 사업의 목적

세계기록유산 사업은 운영의 기본적 바탕이 되는 비전(Vision)과 미션(Mission)이 있는데 이를 논하는 기본 전제는 기록유산이 인류 모두에게 속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계인들은 기록유산을 충분히 보전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세계기록유산이 인류 모두의 소유물이므로 미래세대에 전수될 수 있도록 이를 보존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를 통해 기록유산에 담긴 문화적 관습과 실용성이 보존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이 방해받지 않고 기록유산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를 토대로 한 세계기록유산 사업의 구체적 목적은 첫째, 세계 곳곳에 있는 기록유산에 대해 가장 적절한 기술과 방법으로 보존을 돋는다. 둘째, 기록유산에 보편적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셋째, 기록유산이 존재를 인지 및 유의하고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인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세계의 기록유산이 인류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라는 데 기본적 바탕을 두고 있다. 그 구체적 주요 목적을 표로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9〉 세계기록유산 사업 목적⁸²⁾

	사업 목적	비고
1	최적의 기술을 활용한 세계 기록유산의 보존	
2	기록유산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의 향상	
3	기록유산의 존재 및 중요성에 대한 세계적 인식 제고	

자료: 세계기록유산 홈페이지를 토대로 필자가 재작성

82) 다른 연구자들과 달리 사업 목적의 순서를 부여한 이유는 세계기록유산 홈페이지(영문) 접속 시 목적에서 순서가 표시되어 있음에 유의하기 위하여 이를 표시하였다. 세계기록유산 홈페이지 중단에 Programme Objectives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다.(검색일:2019.06.03).

세계기록유산의 배경과 목적을 종합해보면 세계기록유산 사업은 기록유산의 보존과 보호 및 활용을 통한 기록유산에 대한 인식 변화의 목표가 있으며 이러한 목표는 비록 순서가 구분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은 동시에 적용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를 제주4·3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연관 지어 생각해보겠다.

첫째, 기록유산의 보존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파악된다. 제주4·3평화재단에서 관리하지 못하는 주요 기록물은 ‘탐라기록관리소’로 이관되어 관리되고 있어 자체적인 관리의 전문성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다.⁸³⁾

둘째, 보편적 접근성 향상의 문제는 이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4·3아카이브를 통해 제주4·3기록물에 대한 온라인상 접근은 가능하다. 하지만 여기에 탑재되어있는 기록물들을 온라인상에서 직접 화면으로 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는 저작권과 개인 정보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제주4·3아카이브에 비공개 대상 기록물에 대한 정보와 사유를 제시해주고 있다.⁸⁴⁾

셋째, 진상규명에 기여했던 다양한 기록들의 모음인 제주4·3기록물의 존재와 중요성에 대한 세계적 관심을 유도하고, 긍정적 인식을 제고 하기 위해 필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세계기록유산 추진의 중요한 목적으로 할 수 있으며, 제주4·3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의 필요성을 확인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2. 세계기록유산 등재 대상 및 등재 기준

1) 세계기록유산 등재 대상

기록유산은 기록을 담고 있는 정보 또는 그 기록을 전하는 매개물이다. 이는 단독 기록일 수 있으며 기록의 모음(archival fonds)일 수도 있다. 선언적 의미로는 인류의 기억을 보호하는데 사용된 매체라면 어떤 것이든 기록유산이 될 수 있다.⁸⁵⁾ 유네스코에서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예시로 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83) “4·3 관련 수집자료 중 중요 문서는 탐라기록관리소 이관”, 제주4·3평화재단, 앞의 책, p.256.

84) 제주4·3아카이브 홈페이지 공지글에 게시되어 있다.(검색일:2019.05.30).

85) 유네스코에서 발간한 『세계기록유산』의 발간사에서는 세계기록유산은 원칙적으로 인류의 기억과 관계되는 것이라면 어떠한 것도 등재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래의 표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 대상으로 나와 있는 목록이 예시이다.

〈표 10〉 세계기록유산 등재 대상

목록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필사본, 도서, 신문, 포스터 등 기타 자료로 기록이 남아 있는 자료그림, 프린트, 지도, 음악 등 비문자 자료(non-textual materials)전통적인 움직임과 현재의 영상 이미지오디오, 비디오, 원문과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형태의 정지된 이미지 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전자 데이터

자료: 세계기록유산 홈페이지를 토대로 필자가 재작성

2)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준

세계기록유산은 진정성, 독창성 및 비대체성 그리고 세계적 중요성을 ‘주요 기준’으로 하여 등재가 결정된다. 세계적 중요성의 기준은 그 영향력과 시간, 장소, 인물, 주제와 테마, 형태와 스타일의 다섯 가지 ‘비교 기준’을 토대로 ‘상대적’인 관점에서 평가된다.

〈표 11〉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준

기준	항목	내용
주요 기준	진정성	해당 유산의 본질 및 기원(유래)을 증명 가능 작품
	독창성/ 비대체성	특정 기간 및 지역에 지대한 영향력, 유산 소멸 시 심각한 해악
	시간	세계적 관점에서 유산이 가지는 중요성
	장소	국제적인 일의 중요한 변화의 시기를 현저하게 반영하거나 인류 역사의 특정한 시점에서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는 경우
	사람	세계 역사와 문화의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했던 특정 장소와 지역에 관한 주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경우
	주제	전 세계 역사와 문화에 현저한 기여를 했던 개인 및 사람들의 삶과 업적에 특별한 관련을 갖는 경우
비교 기준	형식	세계 역사와 문화의 중요한 주제를 구현하고 있는 경우
	희귀성	뛰어난 미적, 형식적, 언어적 가치를 가지거나 형태 및 스타일에서 중요한 표본이 된 경우
	전체성	독특함, 희귀성
	위협	온전성, 전체성, 통일성, 보존성
보조 기준	관리계획	위험 요소 대비 안전성, 안전 담보 조치의 적절성
		적절한 보존 및 접근 전략 존재 여부

자료: 세계기록유산 홈페이지를 토대로 필자가 재작성

(1) 진정성(Authenticity)

세계기록유산의 ‘진정성’이란 해당 유산의 본질 및 기원이나 유래를 증명할 수 있는 정품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제주4·3기록물의 경우 그 특성상 1차 자료가 부족하다는 특징이 있었다. 따라서 등재 대상의 범주를 설정하여 그 진정성이 확보된 기록물을 대상으로 문화유산적 가치를 살펴보았다.

미군정 기록은 당시 한반도에 주둔한 미군에 의하여 생산되었으며, 현재 대부분이 NARA에 보관되어 있다. 군·경기록물도 생산자의 직인이 찍혀있거나 국무 위원 서명, 문서의 책임자에 대한 명칭이 기록에서 다 드러나기에 진정성이 확인된다. 무장대 기록은 경찰에 의해서 입수되었거나 혹은 자신의 경험에 대한 기록을 직접 작성한 것이기에 그 출처가 확인되고 있다. 각종 피해조사 기록의 경우도 언론사, 지방 의회, 국회, 정부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주4·3위원회를 통해서 수집되었고 실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를 거쳐 피해 사실에 대한 확인과 신청인·보증인·참고인을 활용하여 피해 조사 기록의 내용의 출처에 관한 확인이 가능하다. 언론사 및 지역 연구단체 그리고 4·3위원회에 의해 수집된 구술 기록물 역시 구술자의 인적사항으로서 성명, 나이, 주소지 등이 확보되어 있어 그 진정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 독창적(Unique)이고 비(非)대체적(Irreplaceable)인 유산

세계기록유산의 ‘독창성 및 비대체성’은 특정 기간 또는 특정 지역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음이 분명한 경우이거나 해당 유산이 없어지거나 유산의 품질이 하락한다면 인류 유산의 발전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리라 판단되는 경우이다. 독창성과 비대체성에 대한 기준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역사적 사건을 담고 있는 기록의 경우 그 기록이 영향을 미쳤는지 그 사건이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구분이다. 결국 이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역사적 사건이 영향을 미쳤다면 그 역사적 사건을 반영한 기록물이 바로 등재될 수 있는 기록이기 때문이다. 『진상조사보고서』는 제주4·3사건이 ‘특이’함을 설명하였다.

일본의 대표적 일간신문 『요미우리』도 20세기 일어난 세계 100대 ‘특이’한 사건의 하나로 ‘제주4·3사건’을 선정하였다.⁸⁶⁾ 제주4·3사건의 경우 세계사에서 ‘냉전’의 시기, ‘제주도’라는 특정 지역에 강력한 영향을 끼쳤다. 제주4·3기록물은 이러한 제주4·3사건의 역사를 반영하는 기록물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독창적이다.

제2장에서 제주4·3기록물의 경우 비대체적인 유산의 성격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미 군정 기록물은 한반도와 제주도에 진주한 미군에 의해서 수집된 정보로서 그 정보의 존재 자체가 비대체적이다. 비록 기록에 반영된 시각이나 내용의 사실성에서 부족한 점이 있긴 하지만 미군정 기록이 없었다면 제주4·3사건 당시의 상황을 특정한 기관에 의해 집중적으로 수집된 기록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무장대 기록이 없었다면 제주4·3사건 당시 행위자로서 그들의 생각이나 제주4·3사건의 원인에 대한 미시적이고도 심층적 연구가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각종 피해 기록과 구술 기록물의 특성 중 하나는 바로 유일성이다. 제주4·3사건의 역사를 증언한 체험자의 기억으로서의 증언 영상 하나하나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제주4·3사건에 관해 기록으로서 유일하며 비대체적임을 의미한다.

제주4·3기록물이 없었다면 이렇게 ‘특이’하고 ‘세계적 중요성’이 큰 제주4·3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이며, 그러기에 제주4·3기록물은 독창성이 있으며 비대체적이라고 할 수 있다.

(3) 세계적 관점에서 유산이 가지는 중요성

세계적 관점에서 유산이 가지는 중요성은 앞서 말한 다섯 가지 ‘비교 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제주4·3기록물이 가지는 중요성을 시간, 장소, 사람, 주제, 형식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겠다.

등재 기준으로서 ‘시간’과 관련하여 제주4·3기록물을 대표하는 개념은 바로 ‘냉전’이다. 제주4·3사건은 국내외적인 배경으로 세계 냉전 구도와 한반도 분단 체제 하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이다.

86) 그 이유로 첫째, 제주도와 같은 제한된 지역에서 3만 명에 가까운 민간인이 학살된 점, 둘째, 이런 중대한 역사적 사건이 50년 동안 국제 사회는 물론 한국 사회 내부에서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제주4·3위원회, 앞의 백서, pp.12-13.

등재 기준으로서 ‘장소’와 관련되어 ‘제주도’는 제주4·3사건의 발생과 전개 과정의 장소로서의 의미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제주4·3사건의 진상규명운동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가진다. 제주4·3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제주도가 세계 냉전 체제 하에서 동북아시아의 요충지로 설명될 수 있다. 제주도는 세계사적으로는 시대를 달리하며 각각 제국의 관점에서 몽골, 일본, 미국의 군사적 진출과 방어를 위한 전략적 요충지였다. 제주4·3사건의 진행 과정에서도 유엔 회의에서 제주의 군사 기지화 문제가 대두되었을 정도로 제주도가 가지는 지리적 위치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였다고 할 수 있다.⁸⁷⁾

등재 기준으로서 제주4·3사건 기록물과 관계되는 ‘사람’은 다양하다. 우선 가장 중요한 인물은 4·3사건 당시 희생된 모든 사람일 것이다. 여기에는 특별법에서 말하는 무고한 수많은 주민도 있겠지만 4·3사건 당시 진압 작전에 참여했던 군인·경찰을 포함한 진압대도 포함되어야 한다. 당시 경찰 약 140여명, 군인 약 180여명 등도 이 당시 희생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군정과 관련하여서는 4·3사건 당시 제주에 근무했던 미군 장교 출신 인물이 있을 것이고, 각종 피해 조사 기록과 구술 기록물에서는 과거사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현재 제주도민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제주4·3사건 당시 어려움 속에서도 정의 구현을 시도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제주4·3기록물의 중요성이 생기는 것이다.

제주4·3기록물의 ‘주제와 테마’로는 ‘폭력’과 이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통한 ‘과거사 극복’이 될 수 있다. 우선 제주4·3사건의 역사는 곧 폭력의 역사였다. 경찰 및 서북청년단에 의한 탄압이라는 제주4·3사건의 주요한 원인은 폭력의 역사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이에 대한 저항으로서 제주4·3사건 당시 주요한 행위자 중 하나인 제주도 남로당 무장대 또한 경찰지서에 대한 습격 및 우익 세력에 대한 저항적 폭력으로 맞섰다. 제주4·3기록물은 이러한 폭력의 주제를 담은 기록물이다.

또 하나의 주제로는 ‘과거사 정리’이다. 이는 제주4·3과 관련하여 피해를 야기한 측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법적·인적 청산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제주4·3사건은 과거사 극복의 모범사례라 할 만하다.

87) 허호준, “1947년 냉전체제의 형성과 제주도” 제주4·3연구소, 『4·3과 역사』 제17호, 도서출판 각, 2017, pp.262-264.

앞서 살폈듯이 제주4·3특별법이 제정되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를 토대로 시행한 진상 조상에서 제주4·3사건의 원인과 배경 및 전개 과정 그리고 피해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연구가 되었다. 이 연구는 내용과 신뢰성 면에서 다양한 장치를 확보함으로써 그 공신력이 인정받고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의 모범사례로 이해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제주4·3사건 당시 있었던 국가권력의 부당한 사용에 대한 공식 사과가 있었다. 국가 지정 추념일로 지정되면서 역사적 사건에 대한 공식적 추모가 이루어지고 있다. 제주4·3사건 71주기를 맞는 2019년에는 당시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경찰과 군인을 대표하여 경찰청장과 국방부에서 미흡하지만 사과의 입장을 표명해왔다.⁸⁸⁾ 인적 처벌의 관점에서 법적 청산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제주4·3기록물은 제주도에서 ‘과거사 극복’이 성공적으로 구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형식과 스타일’면에서 제주4·3기록물은 문헌기록과 구술 기록물로 나눌 수 있다. 미 군정 기록물, 군·경기록물, 무장대 기록물의 경우 대부분 문헌기록이다. 그러나 제주4·3사건의 특성상 문헌기록은 미군정이나 군·경기록물로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필요했던 것이 문헌기록을 통해 얻지 못하는 다양한 구술 기록물이다. 제주4·3사건의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구술 기록물의 수집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제주4·3기록물의 ‘형식과 스타일’상의 특징은 바로 공공적 성격의 문헌기록과 구술 기록물이 많다는 것이다.

(4) 보조 요건

기록물의 다양한 내용과 형식 중에는 보조 요건을 만족시키는 부분들이 존재할 수 있다. ‘전체성’이란 기록물의 완전성으로서 기록물이 온전히 하나로 보존되고 있는지를 말한다. ‘희귀성’은 결국 독특하거나 희귀한 자료를 갖고 있느냐 하는 점이다. ‘위협’이란 유산의 보존상태가 각종 위험요소에서 안전한 것인지 혹은 안전을 담보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관리계획’과 관련해서는 인류에게 소중한 가치를 가지는 다양한 기록물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등재 신청 전에 미리 밝히는 것을 말한다.

88) 김성진, 『제주의 소리』(2019.04.04), “대통령의 사과와 국방부·경찰청장의 유감 표명”(검색일:2019.05.30).

이는 단순히 세계기록유산 등재라는 타이틀을 통한 홍보 효과보다는 유산의 존재와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이 가치를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인가와 직접 관련된다.

3. 세계기록유산 국내 및 국외 등재 사례

세계기록유산 국내 등재 사례를 살펴보겠다.⁸⁹⁾ 1997년 세계기록유산 사업이 처음 시작될 때 한국에서는 조선 시대 기록인 『훈민정음』과 함께 『조선왕조실록』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훈민정음』은 한글의 창제 원리를 이해하기 쉽게 풀이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를 책으로 편찬하여 당시 백성들에게 알렸다.⁹⁰⁾

『조선왕조실록』은 조선의 유교적 지배 및 질서에 대한 통합적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보 제151호로 지정되어 있다. 태조부터 철종까지 25대의 조선 왕조의 역사에 대한 기록으로서 ‘조선 역사의 자화상’이라 불리기도 한다.⁹¹⁾

2001년에는 『승정원일기』와 『불조직지심체요절』 하권(이하 직지)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승정원일기』는 국왕의 비서기구라고 할 수 있는 기관인 승정원에서 날마다 출납한 각종 문서, 왕의 명령, 왕과 신하의 대화 기록한 일기 형식의 국가기록물로 조선 후기의 국정 운영에 관한 구체적 실상이 들어가 있다.⁹²⁾

직지는 한국의 세계기록유산과 관련하여 특별한 의미를 안고 있다. 직지는 1372년 백운 화상이 성불산에서 부처를 비롯하여 인도와 중국의 선·조사들 마음의 본체라 할 수 있는 부처의 본성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뽑아서 편찬한 선불교 최초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 직지가 갖는 의미는 금속활자의 발명을 실증적으로 입증하는 증거자료라는 점이다.

89) 한국은 세계기록유산 분야의 강국이라고 할 수 있다. 2019년 5월 현재, 128개 국가 8개 기구 및 단체의 기록유산으로 427건이 등재되어 있는데 등재 건수 기준으로 독일·영국·폴란드에 이어 네덜란드와 함께 16건으로 공동 4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세계기록유산 홈페이지 접속 후 우측에 있는 register 메뉴를 클릭하면 statistics에서 세계기록유산 등재 현황과 국가별 등재 건수를 확인할 수 있다.(검색일: 2019.05.12).

90) 한국국학진흥원, 『한국의 세계기록유산』, 준디자인, 2018, pp.14-33.

91) 위의 책, pp.34-59.

92) 위의 책, pp.78-91.

직지상의 제정과 직지와 관련된 청주 고인쇄박물관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인 청주시에 세계기록유산센터(ICDH)의 유치가 확정되었다는 점도 중요하다.⁹³⁾

2007년에는 고려대장경 및 제경판(이하 대장경)과 조선왕조 의궤가 등재되었다. 대장경은 불교 경전의 총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부처가 입멸한 이후 몇 차례의 결집을 통해 삼장(三藏)이 마련되었다 전해진다. 이후 각국에서 대장경이 출현하였으나 현재 남아 있는 것은 대장경 뿐이다.⁹⁴⁾

『의궤』는 조선 시대 왕실에서 행한 여러 가지 의례에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한 책이다. 조선 후기 국가 왕실 의례의 실상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형태적인 측면에서도 독특함과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기록은 같은 한자문화권인 중국과 일본에서도 없는 기록이며 보물 제1901호 1-12호로 소장처별로 1901호의 하위 항목으로 보물 지정이 되어있다.⁹⁵⁾

2009년 등재된 『동의보감』은 동양 의학의 이론과 실제를 뜻하는 명칭이며, 왕명에 따라 당시 의학 전문가와 문인들이 협력하여 작성되었고, 이를 총괄하여 허준이 편찬하였다. 동아시아에서 전해지는 2천여 년 동안 축적되어온 이론을 집대성하여 의학적 지식과 임상적 경험을 전집으로 통합하였다.⁹⁶⁾

2011년에는 『일성록』이 등재되었다. 일성록은 당대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현대사 기록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근대 시대 전제군주 국가에서 국왕이 스스로 자신의 정치 운영을 되돌아보아 반성하고, 이에 대한 반성으로 국정 운영에 참고할 자료로 삼기 위해 작성한 일기라는 점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성격의 기록물이라고 할 수 있다.⁹⁷⁾ 또한 광주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이 등재되었다. 다음 절에서 국외 세계기록유산 사례 중 아르헨티나 인권기록유산과 함께 그 중요성과 등재된 사유에 대해 함께 비교하도록 하겠다.

2013년에는 『난중일기』와 새마을운동 기록물이 세계기록으로 등재되었다.

93) 한국국학진흥원, 앞의 책 pp.60-77.

94) 경(經)·율(律)·논(論)으로 이루어진 삼장(三藏)으로 설명된다. 우주의 진리를 설파한 것이 ‘경’이고 윤리적 규범을 밝힌 것이 ‘율’이며, 경전의 난해한 부분을 해석한 것을 ‘논’이라 할 수 있다. 위의 책, pp.92-105.

95) 위의 책, pp.106-121.

96) 위의 책, pp.106-121.

97) 위의 책, pp.140-153.

『난중일기』는 이순신 장군이 전쟁 중 쓴 일기로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의 중 대부분 기록이 작성되었다. 난중일기는 비록 지휘관이 전쟁 중에 겪은 일기라는 개인적 자료의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그 속에 전투 상황 및 당시의 날씨, 전투 지역의 지형과 그곳에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의 생활상까지 알 수 있는 중요한 기록물이라고 할 수 있다.⁹⁸⁾

새마을운동 기록물은 한국 사회에서 1970년대 농촌의 환경 개선과 생산 기반 조성 및 소득증대에 공헌하고, 빈곤 극복과 지역사회공동체 회복을 통하여 국가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는 새마을운동에 관한 기록물이다. 근면·자조·협동이라는 새마을 정신 그리고 하면 되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보급되었다. 국제 사회 발전을 위한 참고 자료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⁹⁹⁾

2015년에는 한국의 유교 책판과 KBS 특별생방송 이산가족 찾기 기록물 등재가 되었다. 한국의 유교 책판은 조선 시대 서책을 발간하기 위하여 목판에 판각해서 만든 인쇄용 책판의 모음이다. 조선 시대 유교적 사상과 신념을 후세대에 전하고 그 중요성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서 작동한 출판 시스템을 잘 보여주는 증거물이라고 할 수 있다.¹⁰⁰⁾

KBS 특별생방송이산가족찾기 기록물은 강제 이주·징용으로 인한 가족의 이별, 해방 이후 정부 갈등에 따른 남북 분단상황 속에서 이별하게 된 이산가족을 찾기 위해 생산된 기록이다. 450시간이 넘는 방송 분량, 다양한 기록물의 형태와 2만 점이 넘는 수량, 10만 명이 넘는 방송 출연 신청자의 수가 특징적이다.¹⁰¹⁾

2017년도에는 3개의 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조선 왕실 어보와 어책은 어보·교명·옥책·죽책·금책 기록물 5개 종류의 669점으로 구성되어 있다.¹⁰²⁾ 어보와 어책의 가치는 기록 형태의 다양성과 동아시아 유교문화권 내에서 독특한 문화양상을 보이는 조선 유교와 기록문화의 다채로움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나라의 정치·문화 전반을 이해할 수 있는 종합적 기록물로서 의미가 있다.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은 일제의 식민화 정책으로 강제로 제공된 1,300만 원의

98) 위의 책, pp.168-181.

99) 위의 책, pp.182-193.

100) 위의 책, pp.194-211.

101) 위의 책, pp.212-227.

102) ‘어보’는 조선 시대 및 대한 제국 시기 왕실 혹은 황실 인사의 벼슬의 등급이나 그 이름을 옥이나 금동에 새긴 것을 말하며, ‘옥책’은 옥간에 내용을 새겨서 첨으로 엮어 만든 것이다. ‘죽책’은 대쪽에 글을 새겨 수여하는 문서이며, ‘금책’은 황제 국가가 책봉 의식에서 사용한 것으로 금동판에 글을 새긴 문서이다. ‘교명’은 새로운 책봉 할 때 내리는 훈유 문서이다. 위의 책, pp.228-241.

차관을 갚기 위한 국민의 노력이 담겨 있는 기록물이다. 등재된 기록물에는 발단과 전개에 관한 자료로서 발기문 및 취지문 12건, 국채보상 운동 확산에 관한 자료로서 연락문 및 기부자 명단 등 77건, 국채보상 운동의 전개 상황을 전달한 언론 자료로서 논설, 광고, 국내외 관련 기사 2,264건, 국채보상운동 관련 통감부 자료 122건이 포함되었다.¹⁰³⁾

조선통신사 기록물은 1607년부터 1811년까지 일본 에도 막부의 초청으로 조선에서 일본으로 파견된 외교사절단인 조선통신사에 관한 자료이다. 그 의미는 17세기에서 19세기 동안 약 200년 동안 평화구축과 문화교류의 역사를 담은 기록물이라는 것이다.¹⁰⁴⁾

종합하면, 세계기록유산 등재 사례를 토대로 국내 세계기록유산의 추세와 제주 4·3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국내 세계기록유산의 등재 추세는 단일 기록 등재에서 기록물 등재로 점차 변하고 있다. 근·현대 기록물이 등재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점도 파악할 수 있다. 세계기록유산 사업 초기 주로 고려의 불교적 가치·조선의 유교적 가치를 반영한 기록이 등재되었다.

직지의 등재를 통해서는 해외 소재한 한국 관련 기록의 등재가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록물과 새마을운동 기록물의 등재를 통해서 정치적 반대와 역사적 평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등재 기준에 충족하고 등재 절차를 거친다면 등재의 가부(可否)에는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조선통신사에 관한 기록의 등재를 통해 공동등재를 통한 세계기록유산 등재의 성공과 방법에 대한 필요성과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KBS 특별생방송을 통해 방송 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될 수 있다는 등재 대상의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대한 경험 축적이 상당히 이루어졌음을 파악할 수 있다. 아래 표에 2019년 현재 국내 세계기록유산에 등재 목록과 기록유산의 소장기관 그리고 등재 연도를 정리하여 놓았다.

103) 위의 책, pp.242-263.

104) 위의 책, pp.264-277.

〈표 12〉 국내 세계기록유산 등재 현황¹⁰⁵⁾

순번	등재 목록	소장 기관	등재 연도
1	『훈민정음』	간송미술관	1997년
2	『조선왕조실록』	서울대 규장각·국가기록원	
3	『승정원일기』	서울대 규장각	2001년
4	『불조직지심체요절』 하권	프랑스 국립도서관	
5	『의궤』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07년
6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	해인사	
7	『동의보감』	국립중앙도서관 외 3곳	2009년
8	『일성록』	문화재청	2011년
9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록물	국가기록원 외 6곳	
10	『난중일기』	현충사	2013년
11	새마을운동 기록물	국가기록원·새마을운동중앙회	
12	한국의 유교책판	한국학진흥원	2015년
13	KBS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한국방송공사 외 2곳	
14	국채보상운동기록물	한국금융사박물관 외	2017년
15	조선통신사에 관한 기록	서울대 규장각 외 27곳	
16	조선왕실 어보와 어책	국립고궁박물관	

자료: 한국국학진흥원(2018)을 토대로 필자가 재작성

다음으로 제주4·3사건과 유사한 역사적 사건을 주제로 하거나 유네스코에 의해 인권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국외 등재 사례를 검토해보겠다. 1997년 등재된 뉴질랜드 기록유산은 최초의 여성 참정권 확보로서의 의의가 있는 기록물이다. 이를 위해 당시 뉴질랜드 성인 여성의 1/4이 탄원서 서명에 참여하였다. 제1차 세계 대전 전후해서 오스트리아(1902)·핀란드(1906)·노르웨이(1913)가 여성의 참정권이 인정되는 몇 안 되는 나라였다는 점에서 이 기록물은 선구적(先驅的)이라고 할 수 있다.¹⁰⁶⁾ 2003년 등재에 성공한 폴란드 기록유산은 1980년 폴란드 그단스크의 조선소 파업위원회가 요구한 21개 사항이다. 일반적으로 노동운동의 경우 봉급과 근로 조건에 국한된 내용인 경우가 많으나, 이 기록물의 경우 자유 노조 설립과 겸열 철폐를 주장하고 정치적 석방을 요구했던 그들의 정치적 투쟁이자 노동조합을 통한 사회운동으로서 의미가 있다.¹⁰⁷⁾

105) 한국국학진흥원, 『한국의 세계기록유산』, 준디자인, 2018, p.12.

106) 유네스코 저, 김윤경 역,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기원전 1700년부터 현재까지 인류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역사적 기록물』, 예문사, 2015, pp.414-416.

107) 위의 책, pp.569-571.

필리핀의 기록유산은 필리핀에 뿐만 아니라 박혀있던 독재를 비폭력적 방법으로 극복·전복한 피플파워 혁명 기간의 제작된 라디오 생방송이 편집없이 녹음된 자료이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일어난 평화적 민중 혁명이었다. 특히 이 방송의 중요성은 민중 봉기 사건이 세계에 생중계된 최초의 사례 중 하나라는 것에서 드러난다.¹⁰⁸⁾ 2003년 등재된 프랑스 기록유산은 국제연합에 의한 ‘세계 인권선언’(1948)의 바탕이 된 이 선언은 문화·종교·정치·인종·경제·사회의 차이를 뛰어 넘는 보편적 가치를 잘 보여준다. 이는 빼앗을 수 없는 모든 인간의 권리와 의무를 입증해주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¹⁰⁹⁾ 칠레는 1973년부터 90년까지 군사 독재 정치를 받았다. 아우구스토 피노체트(Augusto Pinochet) 정권 시절의 특징은 강력한 조직적 정당 탄압과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박해였는데, 당시 생산된 공판 조서·신문 보도·사진 및 기타 역사적 기록물들이 여러 기관에 소장되어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는 2007년 두 개의 인권기록유산이 등재되었다. 남아공의 인종차별정책을 행하는 정부에 맞서 일어났던 주요 투쟁에 관한 독특한 시청각 자료이다. 20세기 일어난 인종 및 이념 대립의 하나로서 문화와 정치에 미친 영향이 매우 크다.¹¹⁰⁾ 넬슨 만델라(Nelson Mandela) 형사 자료는 당시 극단적 인종차별정책에 맞서 싸웠던 넬슨 만델라의 1963년 재판 기록이다. 당시 투쟁 기록이었던 아프리카민족회의의 활동 목표와 정당성에 대한 주장을 담고 있다. 만델라는 당시 이 판결에 따라 90세까지 로벤섬에서 수감생활을 하였다.¹¹¹⁾

캄보디아 투오슬렝 학살 박물관 기록물은 교도소와 심문을 위한 장소로 사용되었던 5,000명이 넘는 수감자의 사진과 자백서 등 관한 다양한 기록으로 이루어져 있다. 크메르 루즈 정권 시절 비인간적 만행을 증언해주는 기록물이다.¹¹²⁾ 파라과이는 이른바 ‘공포의 문서라’는 이름으로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되었다. 알프레도 스트로에스네르(Alfredo Stroessner)가 35년 간의 독재 기간에 자행한 정치적 탄압에 관한 공문서들이다. 그 공포의 문서에는 독재 체제 하에서 중대한 인권 침해와 체계적인 억압이 있었음을 증명하고, 콘도르 작전(Operation Condor)을 뒷받침하는 증거도 담겨 있다.¹¹³⁾

108) 유네스코, 앞의 책, pp.574-575.

109) 위의 책, pp.322-325.

110) 위의 책, pp.564-565.

111) 위의 책, pp.544-546.

112) 위의 책, pp.560-560.

113) 위의 책, pp.518-519.

도미니카공화국에서는 라파엘 트루히요(Rafael Trujillo)가 1930년부터 61년까지 31년간 장기 집권을 하였다. 그의 독재 정치로 인한 피해는 국내만이 아니라 인접 국가까지 확대되었다. 당시의 기록을 담고 있다.¹¹⁴⁾

종합하면, 세계기록유산 국외 등재 사례 중 인권기록유산의 경우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뉴질랜드와 프랑스의 경우처럼 특정한 사건에 대한 피해라기보다는 권리의 확장 및 확인의 측면에서 인권 관련 문서들의 모음이다. 여성 참정권 탄원서의 경우 여성의 제한된 선거권의 확장이라는 의미,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은 천부적 권리로서 인권과 시민의 권리에 대한 제도적 보장을 의미한다. 둘째, 폴란드의 경우처럼 노동과 관련된 인권기록물로서 이는 다른 인권기록유산에 비해 노동이라는 특정한 영역에 대한 기록으로써 구체적 요구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셋째, 이정연(2015)도 주장했듯이, 인권기록 유산으로 분류된 다수의 기록은 특정한 정치적 사건과 관련을 맺고 있는데, 주로 억압적 정치 세력 혹은 권력에 저항하고 교체시키기 위한 저항과 투쟁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표 13> 국외 세계기록유산 등재 사례

순서	인권기록유산	신청 국가	등재 년도
1	1893년 여성 참정권 탄원서	뉴질랜드	1997
2	1980년 그단스크 21개 조의 요구사항	폴란드	
3	1986년 필리핀 피플파워 라디오 방송	필리핀	
4	인간과 시민의 권리에 관한 권리선언 (1789년과 1791년)	프랑스	2003
5	1973년~1989년 칠레 인권기록물	칠레	
6	1976년~1983년 아르헨티나 인권기록유산	아르헨티나	
7	해방운동 영상자료 모음	남아프리카공화국	2007
8	넬슨 만델라 형사재판 기록	"	
9	1975년~1979년 투올 슬렝	캄보디아	
10	1954년~1989년 공포의 문서	파라과이	2009
11	1930년~1961년 인권운동과 저항	도미니카공화국	
12	광주 5·18민주화운동기록물	한국	2011

출처: 이정연(2015), 5·18기록관 홈페이지 참고로 필자가 재구성.

114) 유네스코, 앞의 책, pp.562-563.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역사적 기록물 중 제주4·3사건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국내 등재 사례로서 광주5·18민주화운동기록물, 국외 등재 사례로서 아르티나 인권침해 기록물을 살펴보려 한다. 세계기록유산 등재 국내·외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주4·3사건 기록물의 의미를 비교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동시에 방법적 유용성을 확보할 수 있다. 사례를 비교하는 데에 있어서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서를 주요 자료로 삼았다.¹¹⁵⁾ 여기에서는 광주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의 등재 신청서와 아르헨티나 인권기록물의 등재 신청서를 토대로 이들이 등재될 수 있었던 이유를 분석해보려고 한다.¹¹⁶⁾

1) 국내 등재 사례: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광주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을 비교사례로 선정한 이유는 제주4·3과 광주 5·18의 내용적 유사성에서 찾을 수 있다. 우선 팀 셔록(Tim Shorrock)이 주장한 제주4·3과 광주5·18 사건의 유사성은 원인 혹은 전개 과정에서 미국의 역할, 냉전이라는 세계사적 시간 속에서 지역 주민들의 자유에 대한 열망과 투쟁, 이후 이에 따른 반대급부로 받게 된 역사적 탄압과 지역이 이루어낸 성과에 대한 일부 특정 정치 세력의 반복되는 공격, 마지막으로 진상규명 과정에서 인접 국가인 일본과의 긍정적 연관성이 있다.¹¹⁷⁾ 이성우(2011)는 국가폭력에 대한 기억 투쟁으로서 두 사건을 비교하고 있다. 기억 투쟁의 조건과 양상에 따라 정치적 함의가 달라짐을 설명하고 있다. 강요된 침묵 속의 제주항쟁과 민주화운동의 출발점으로 자리 잡게 된 광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¹¹⁸⁾ 2011년 5월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의 등재되었다.

115) 등재 신청서에는 기본적으로 해당 기록물이 왜 등재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다. 따라서 기록물의 구체적 등재과정이나 활동에 대한 분석은 제한적일 수 있다. 하지만 등재 신청서에는 신청하려는 기록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다. 필수 정보로서 등재 개요 및 등재 신청 기록물에 범주 및 그에 대한 내용적 기술, 법적 정보가 모두 들어 있다. 이를 통해 세계기록유산의 등재된 이유 및 그 구체적 기준과 근거를 종합적으로 살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16)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서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홈페이지에서 영문으로 다운로드 받아 확인할 수 있다. 검색은 연도별, 지역별, 국가별, 주제별로 가능하다.(검색일:2019.05.30).

117) 팀 셔록(Tim Shorrock), 미국 기자가 본 4·3과 5·18 “제주4·3연구소, 『4·3국가폭력과 기억』, 2018, pp.61-75.

118) 이성우, “국가폭력에 대한 기억투쟁”,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오토피아』 제26권 제1호, 2011, pp.63-86.

군사정권에 저항하는 민주화운동으로서 우리나라뿐만 동아시아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그 세계적 중요성이 인정된 것이다.¹¹⁹⁾ 이를 전후로 광주는 세계기록물 소장기관협의회 회의를 주최하는 장소로서 그리고 세계기록유산의 결정적 권한을 가진 국제자문위원회(IAC)회의도 개최하게 되었다.¹²⁰⁾ 광주 5·18민주화운동의 주제와 테마는 민주주의·법치·과거청산이다. 군부의 정치개입을 반대하며 국민이 참정권과 민주화를 요구하였던 항거 기록을 통해 민주주의라는 주제를 도출하였고,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권을 주장하며 군부와 싸웠던 기록을 통해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군부의 불법적 계엄령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주권재민의 저항권의 모범을 보였던 기록에서 현대 국가 운영의 기본 원리가 되는 법치라는 주제를 포함했다. 결국 이러한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 규명·명예회복·피해자 보상·배상, 기념사업을 주장했던 시민과 학생들의 활동 기록을 통해 과거청산의 모범적 사례임을 증명해냈다. 세계기록유산 등재의 보조 요건 중 실질적으로 등재에 도움이 된 항목은 희귀성과 관리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관리계획에서 세계기록유산 등재 시 별도의 건물에 5·18아카이브를 설치한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희귀성에서는 독재에 항거한 역사는 전 세계에 많지만 그러한 역사적 기록이 비교적 온전하게 보전되어 등재된 사례는 없다는 점을 어필하였다. 광주 5·18민주화운동의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관련해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들이 있다.¹²¹⁾

2) 국외 등재 사례: 아르헨티나 인권기록유산

한국의 대척점은 우루과이 수도 몬테비데오 부근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우루과이와 국경을 이웃하는 나라가 아르헨티나이다.¹²²⁾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속하는 나라들 대부분 과거사의 역사적 경험을 겪었으며, 당시 생산된 기록이나 경험자의 기억과 같은 인권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비록 지리적으로 정반대에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과거사의 문제는 어느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상징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119) 광주광역시, 『1980년 5월의 기록, 인류의 유산되다: 5·18민주화운동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백서』, 새날출판사, 2013.

120) 유네스코, “2013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인권기록물 소장기관회의”, 2013.

121) 안종철, “5·18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고찰”(검색일:2019.05.30).

122) 대척점이란 지구의 중심을 사이에 둔 지구의 반대지점을 말하는데 계절 및 낮과 밤이 정반대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아르헨티나를 선정한 또 다른 이유는 내용적 측면에서 과거사 정리 방향의 시사점이 있기 때문이다. 아르헨티나 역시 과거사 정리의 모범적 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제주4·3사건의 해결 과정에서 진상규명을 통한 과거사 정리가 모범이었다면, 아르헨티나는 정의에 가치에 입각한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상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다. 아직 가해자에 대한 어떠한 처벌도 이루어지지 못한 제주4·3사건이 과거사 정리 방향에서 참고해야 할 만한 중요한 사례라 여겨진다.

유네스코는 2007년 “1976년에서 1983년의 인권기록유산: 국가 주도의 테러 행위에 맞선 투쟁의 진실과 정의, 기억을 담은 기록물”이라는 이름으로 아르헨티나의 인권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 목록에 추가했다. 아르헨티나 군사 독재 정권에 의해 발생한 국가폭력과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박해와 절멸의 계획이라는 주제를 통해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아르헨티나는 과거사 정리의 모범적 국가로 손꼽힌다.¹²³⁾ 현재까지도 과거 탄압 당시 실종된 사람들의 어머니회인 ‘5월 어머니회’는 진상규명을 위한 집회를 계속하고 있을 정도로 그 ‘지속성’이 강하다. 군사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잡고 자국민을 탄압했던 비델라는 재판을 통해 과거 탄압에 대한 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처벌되기도 하였다.

제주4·3사건의 경우 폭력을 행사한 세력에 대해서 어떠한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르헨티나의 경우 제주4·3사건의 탄압의 과정의 면모를 비교하여 볼 수 있다.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하는 데 있어 방법론적 유용성을 제공할 수 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무려 18개소의 개인 및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새마을운동의 경우 다양한 생산처의 기록물이 국가기록원과 새마을운동중앙회라는 두 기관에 의해 통합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장소에서 보관되고 있어 사실상 기록의 통합적 보관의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등재에 성공한 것이기 때문이다. 아르헨티나에서 있었던 심각한 인권 침해와 강제 실종(enforced disappearance) 사건¹²⁴⁾을 규명하는 핵심 자료이기도 하다.

123) 박구병, 앞의 논문, p.186

124) 강제실종협약 제2조에 따르면, 강제실종이란 국가 요원 또는 국가의 허가, 지원, 묵인하에 행동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의한 체포, 강금, 납치 또는 기타 형태의 자유 박탈과, 그에 이어 자유 박탈의 시인을 거부하거나 실종자의 운명이나 소재를 은폐함으로써, 이러한 사람을 법의 보호 밖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김영석, 『UN 강제실종협약의 가입을 위한 국내법적 절차 검토 최종보고서』, 2012, p.33.

특히 주변국이 함께 참여한 독재 정권의 억압 정책으로 잘 알려진 ‘콘도르 작전 (Condor Plan)’으로 인해 발생한 실종 사건들과 깊은 관련이 있다. 아르헨티나의 사례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국가인권사무국 산하의 국립기억자료보관소(Archivo Nacional de la Memoria, ANM)는 공동등재¹²⁵⁾를 신청하기 위해서 정부, 지방자치 단체, 인권단체, 개인 등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을 한데 모았다는 점이다.

아르헨티나의 진실규명과 정의 실현 과정에서 실종자진상규명국가위원회(CONADEP, National Commission on the Disappearance of Persons)는 아주 특별한 사례이다. 역사적으로 처음 결성된 ‘진실위원회’로서, 결론과 권고 사항이 들어있는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 그 임무를 성공적으로 끝맺음으로써 많은 국가들에게 본보기가 되었다.¹²⁶⁾ 최종보고서 『눙카 마스』¹²⁷⁾는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다. 제주4·3위원회의 경우 진상 규명에 있어서 모범사례로 이해되고 있는 만큼 아르헨티나 사례와의 비교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아르헨티나의 사례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기 위해서는 통합된 추진 단체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민간, 공공기관 차원에서 협력 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해주고 있다. 그리고 진상규명 과정과 과거사 정리 및 해결 과정에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아내어 상대적인 제주4·3사건 기록물의 의미와 가치를 뚜렷이 해야 할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아래의 표는 광주5·18민주화운동 기록물과 아르헨티나 인권기록유산의 세계적 중요성이라는 주요 기준이 각각의 비교 기준에 어떤 내용에 해당하는지를 등재 신청서의 내용을 토대로 정리해보았다.

<표 14> 등재 신청서 기재 비교 기준

	광주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아르헨티나 인권기록유산
시간	1980-1997	1976-1983
장소	광주(대한민국, 세계)	아르헨티나(인접국)
사람	시민, 학생, 가해자 등	-
주제와 테마	인권, 법치, 민주주의, 과거청산	국가폭력, 조직적 계획에 따른 박해 및 절멸
형식과 스타일	문헌자료, 영상자료, 구술자료	문서요소, audio visual multimedia

자료: 등재 신청서를 토대로 필자가 작성

125) 여기서 말하는 ‘공동등재’의 의미는 국가 간 협력을 통한 등재의 의미가 아니라 등재 신청을 위한 통합된 자료 제공을 위해 다양한 기관과 단체 그리고 개인이 공동으로 참여했다는 의미이다.

126) 박구병, 앞의 논문, p.180.

127) 눁카 마스(Nunca Más)는 영어로 Never again이라는 뜻이며, 다시는 불행한 역사적 사건이 일어 나서는 안 된다는 상징적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제3장에서 세계기록유산 사업을 통해 제주4·3기록물의 세계기록 유산 등재 가능성을 모색해보았다. 이를 위해 세계기록유산 사업의 배경과 목적, 등재 대상과 기준을 확인하고, 제주4·3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내용적 요소와 어떤 관련을 맺고 등재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결과 제주4·3기록물은 등재 배경과 목적에 부합하며, 등대 대상에 해당하고 등재 기준을 사실상 모두 충족시키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제주4·3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은 등재 가능성을 논할 수 있는 현실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비교사례로서 광주5·18민주화운동기록물과 아르헨티나 인권기록유산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국내·외 비교 사례들이 세계적 중요성을 충족 시키는 기준에 대해서 비교해봄과 동시에 비교 사례의 국가 혹은 지역의 역사적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찾아 보았다.



IV. 제주4·3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가능성

1. 제주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제주4·3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관한 논의는 2012년 12월 제주4·3평화재단이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토론회에서 조진태 5·18 기념재단 실장은 ‘5·18의 역사’에 대해서, 김용철 4·3사업소 학예연구사는 ‘제주 4·3사건 사료 현황’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안종철 전 5·18 기록물 유네스코기록유산등재추진단장, 박찬식 제주4·3추가진상조사단장이 토론하였다.¹²⁸⁾ 이 과정에서 나온 발언 중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위한 역량을 모아내고 공감대 형성을 위한 기초적인 점검부터 필요하다.”라고 역설한 박찬식의 주장은 주목할만하다. 여기서 말하는 등재를 위한 역량 강화란 바로 문화유산적 가치 파악과 등재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볐도민적·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때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2013년 3월 새 정부 4·3 해결 과제 및 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라는 주제로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책 세미나에서는 안종철 전 5·18 기록물 유네스코기록유산등재추진단장과 국가기록원 김재순 학예연구사, 세계유산 전문가이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인 허권이 참석하였다. 허권은 제주4·3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사료가 되는 가치의 학술적인 객관성과 우수성 그리고 과급성을 규명하는 일이다. 둘째로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것은 정치적 함의의 과정이므로 추진 과정에서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거나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하는 일, 마지막으로는 네트워크의 구성을 주문했다.¹²⁹⁾

128) 제주4·3평화재단, “기록문화유산토론회”, 『4·3과 평화』 10호, 2012, pp.4-5.

129) 박미라, 『제민일보』(2013.03.23), “4·3 기록물 유네스코 유산 등재…4·3의 세계사적 의미 정리 관건”(검색일:2019.05.30).

2015년 제주4·3사건 희생자 추념식에서 제주도지사는 “제주4·3 국가 기념일 지정이 주는 의미와 가치를 더욱 확대하고 미래세대에 올곧게 계승해야 한다”며 “4·3유적과 기록유산의 국가 및 국제적 공인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제시했다.

결국, 제주4·3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관한 논의는 제주4·3평화재단과 제주도의회를 거쳐 제기되고, 집행기관인 제주도에서 도지사가 희생자 추념식에서 추진에 대한 지원 의지를 밝히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게 된 것이다. 2018년 1월 제주도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제주4·3사건 70주년을 맞아 등재 사업의 본격적 추진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자치국 4·3 지원과에서 작성되었으며, 제주도에서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해온 일정과 등재 가능 목록과 내용에 대한 제시가 있다. 세계기록유산 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등재 사례를 단순히 나열하고 있다. 등재 지원을 위한 인력을 확보 방안으로 한시적으로 4·3전문가를 채용하여 기존 확보된 기록물을 정리하고, 미발굴된 기록을 확인하는 등의 비교적 구체적 사항도 제시하고 있다.¹³⁰⁾

2. 제주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가능성 검토

특정 기록이나 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이 되기 위해서는 제시된 등재 기준에 충족된 대상을 등재 절차를 거쳐서 신청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재청에서 주관하여 진행하는 ‘국내적 절차’와 유네스코에서 진행되는 ‘국외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등재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등재 대상과 등재 기준에 충족하는지 그리고 등재 절차에 관하여 어떤 사항이 필요하고 준비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제3장에서 세계기록유산 사업의 개요를 다루었으나 등재 절차에 관한 내용은 다루지 않았다. 이는 등재 가능성과 관련하여 제4장에서 다루기 위함이다. 세계기록유산 등재의 국내적 절차를 담당하는 부서는 문화재청이다. 문화재청은 공고를 통하여 세계기록유산 국제 목록의 등재 신청 기록물을 공모하고 있다. 국내적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재청에 의해 등재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130)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 보도자료(2018.01.26),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첫 걸음”(검색일:2019.05.30).

공모를 통해 접수된 기록물 중 2건만 유네스코에 의한 세계의 기록이란 선정을 하기 때문이다. 다음 공모는 이전 공모에서 검토된 기록물이 우선이며, 최근에는 2건만 선정하지 않고 2배수를 추천하여 4건을 추천받은 뒤 2건을 최종 선정하는 방식으로 세계기록유산의 국내적 등재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다.

<표 15> 세계기록유산 국내 공모 선정률

등재 연도	접수 건수	공모 선정률	선정 대상	비고
2013	5건	40%	난중일기 · 새마을운동 기록물	모두 등재 성공
2015	12건	17%	KBS 이산가족찾기 · 한국의 유교책판	
2017	13건	16%	조선왕실 어보와 어책 ·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2019	10건	20%	4·19혁명 기록물 ·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자료: 2011·2013·2015·2017년 문화재청 회의록 및 보도자료를 토대로 필자가 재작성

국내적 절차를 거쳐 선정된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서는 영문 혹은 불문으로 번역되어 세계기록유산 사무국에 제출된다. 사무국은 신청서가 문서로서 완결성을 지니는지 확인한 후 국제자문위원회 산하 등재 소위원회에 송부 한다. 등재 소위원회는 이를 상세히 검토한 후 의견서를 국제자문위원회에 제출하게 된다. 국제자문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등재 여부를 심사하고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등재 여부를 견의한다.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국제자문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등재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국외적 등재 절차와 관련하여 연도별로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를 신청한 건수와 등재에 성공한 건수를 토대로 아래의 표 16과 같이 세계기록유산 등재 성공률을 작성해보았다.

<표 16> 세계기록유산 최종 등재 성공률¹³¹⁾

등재 연도	신청 건수	등재 건수	등재 성공률	비고
2013	78건	55건	71%	제11차 총회
2015	88건	47건	53%	제12차 총회
2017	125건	78건	62%	제13차 총회
2019	-	-	-	심사 보류

자료: 제11·12·13차 국제자문위원회(IAC) 총회 자료를 토대로 필자가 재작성

131) 송정은(2009) · 김귀배(2016)의 논문에서 2013년까지 등재 현황을 인용하고, 2015년, 2017년의 등재 상황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홈페이지에서 국제자문위원회 총회 자료를 열람하여 신청된 수와 등재된 수를 확인하여 계산하였다. 등재 성공률을 반올림 처리하여 표기(검색일:2019.05.30).

세계기록유산 등재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최근 등재 기록물 추세에 관하여 살펴보겠다. 김귀배(2016)는 20세기를 전후한 근·현대 기록물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등재되는 기록물의 형식이 다양화되고 있고 국가 간의 협력을 통해 공동 등재가 확대되고 있는 점이 추세라고 분석했다.¹³²⁾

송정은(2009)은 시기에 대한 분석을 100년 단위의 세기로 파악하여 고대·중세·근대로 나누었을 때 근대의 기록물의 비율이 높다는 점, 다양한 분야의 기록물이 등재되고 있는데 그 중 사회과학과 관련된 부분과 종교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 등재의 진정성과 관련하여 등재 대상 기록물이 원본인지 아닌지가 중요한데 사본이 등재되었다는 점을 볼 때 절대적으로 원본의 확보가 필요한 것은 아님을 지적하고 있다.¹³³⁾

지금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제주4·3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가능성을 검토해보겠다.

첫째, 제주4·3기록물의 등재는 세계기록유산의 주요 목적과 부합한다. 제주4·3기록물 중 일부는 중요한 역사적 성과물인데도 불구하고 외부 공개를 하지 않고 내부 자료만 활용하는 것들이 있다. 제주4·3위원회에서 증언채록한 영상이 바로 이에 해당한다. 이에 대한 보편적 이용 접근성을 향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개인정보로 인해 접근이 제한된다면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이를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법에는 촬영 대상자에 대한 동의와 기술적 처리로 개인 신분 노출은 시키지 않으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는 학술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도 중요하지만 최종적으로 제주4·3기록물이 기록유산으로서 존재하고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 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주4·3기록물의 현황과 특성을 살려서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이에 맞게 신청서를 작성한다면 제주4·3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사업의 주요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에 긍정적 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

132) 김귀배, 앞의 논문, pp.35-37.

133) 송정은, 앞의 논문, pp.73-75.

둘째, 제주4·3기록물을 구성하는 기록들이 세계기록유산의 등재 대상에 각각 해당하고 등재 기준을 충족시킨다는 점이다. 원론적으로는 정보를 전달하고 제시하는 모든 매체와 형식으로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제주4·3기록물은 예시 대상에 해당하는 기록물이 존재하고 있으며 선정 대상으로 선정된 기록의 범주를 설정하여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보니 등재 기준 중 진정성과 독창성 및 비대체성 그리고 세계적 중요성도 충족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내·외 세계기록유산 등재 사례와 비교해도 가능성은 뒤떨어지지 않았으며, 등재 실패 사례에 대한 자료 수집과 분석이 보충된다면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기존 제주4·3사건에 관한 학술적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과 우리나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인프라와 경험 노하우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우선 제주4·3사건에 관한 연구가 정치학 및 역사학 분야에서 축적되고 있고, 다양한 학문 분야로 그 연구 범위 또한 넓어지고 있다. 학술적 연구나 근거가 없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문화유산 활용은 그 의미와 중요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다는 점을 볼 때, 이는 등재에 있어서 긍정적인 요소라고 생각한다. 다만 해외에서 제주4·3사건에 관한 연구와 관심은 좀 더 필요하다. 2019년 6월 UN에서 열리는 심포지엄은 이런 해외 연구의 필요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사라고 생각된다. 앞서 살펴본 대로 2013년 등재 이후 국내적 절차를 거쳐서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신청한 기록물은 모두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다. 따라서 국내적 절차를 위한 문화재청 내부 전문가 회의와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에서 최종 신청대상으로 선정된다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될 가능성이 높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높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있어 극복해야 할 문제점도 존재한다.

첫째, 유네스코에서 세계기록유산 등재 접수를 받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유네스코는 일본 위안부 관련 기록물 등재가 정치적으로 문제화되는 것에 대한 것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의 협의를 중시하는 과정과 절차를 세계기록유산 사업에 추가하려 하고 있다.¹³⁴⁾ 이에 따라 2017년도 문화재청 세계기록유산 등재 공모에서 선정된 「4·19 혁명 기록물」과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심사도 전면 보류되어있는 상황이다.

134) 고영진, 『제민일보』(2019.04.08), “소녀들의 이야기 기록유산 등재무산”(검색일:2019.05.30).

둘째, 소장 되어 있는 다양한 기관의 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모든 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군과 경은 정보 공개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국가기록원도 2018년 제70주년 4·3추념일이 돼서야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을 통해 계엄령 문서의 진본을 최초로 일반인에게 공개했다. 미 군정 기록물과 군·경 기록물에 관해서 박찬식은 “앞으로 더욱 중요한 당시 미국측 자료들이 상당량 공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략)... 미국 측 자료 외에도 공식적인 자료로 당시 한국의 경비대, 경찰, 사법부, 언론 등의 기관이 주체가 된 기록들이 앞으로 드러날 것이다.”라고 예상했다.¹³⁵⁾ 그러나 이는 기대하기 어려운 낙관적 가정이라고 볼 수 있다. 기밀이 해제되어 이미 공개가 된 자료가 등재 대상에 포함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과정에서 미발굴 기록으로서 기밀 자료에 대한 공개 요구 필요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현 단계에서는 기밀 자료 등재에 관한 동의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이다. 설령 등재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선별적으로 이루어져서 핵심적 사실을 제공하는 정보를 담은 기록이 누락 된다면, 세계기록유산 등재의 의미와 취지와 반하기 때문이다.

셋째, 제주4·3사건의 성격을 드러내는 정확한 명칭이 없다는 점이다. 2013년·2015년·2017년 문화재청 세계유산분과 회의록을 보면 다음 연도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대상이 선정되어 나온다. 2019년 등재 대상으로 2017년 공모 선정 대상은 바로 4·19혁명과 동학 농민혁명기록물이다. 두 등재 선정 대상은 모두 근현대 사건과 관련된 기록물이며, 사건의 성격이 기록물 명칭 안에 정확히 드러나 있다. 사건 명칭에 사건 일자나 연도인 숫자가 들어간 등재 대상 기록물 중 유일하게 사건의 성격이 제대로 정해지지 않은 기록물이 바로 제주4·3기록물이다. 물론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서에는 정확한 사건 명칭 없이 문장형으로 기록물의 명칭을 쓸 수 있게 되어 있다. 하지만 단박에 사건의 성격을 드러내게 할 수 있는 명칭이 없다는 것은 등재를 위한 부정적 요소로 작용한다. 이를 통해 사건의 성격에 대한 합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기록물을 등재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제주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제언

제주4·3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현황과 등재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35) 박찬식, 앞의 책, p.487.

첫째,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문화유산은 공적 가치를 지닌다. 국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기에 그 활용과 보존에 대한 책임도 모두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도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의사 결정에 가능한 많은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¹³⁶⁾ 제주4·3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을 ‘정치적 합의’에 근거한 합리적 판단을 요구하는 ‘사회적 과정’이자 ‘공적 행위’로 이해할 때, 많은 이해당사자가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중요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제주도가 주도하는 직접적 추진의 방식은 부정적이라 할 수 있다. 앞서 네트워크 구성이나 추진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주장도 결국 관 주도의 일방적 등재 추진이 아닌 다양한 사회적 계층과 분야의 국민이 참여할 수 있게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같은 국가적·세계적 단위 문화유산의 활용은 전국민적 여론이 집합되었을 때 더욱 큰 힘을 얻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차근차근 작은 단위의 지역에서부터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단계를 밟아 가야 한다. 제주4·3사건 당시 지역 단위로 자체적으로 진상 조사를 수행한 마을이 있다. 이런 공동체 단위의 기록들을 등재하기 위해 지역 주민의 참여가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제주 전 지역에 걸쳐 기록물 수집을 위한 적극적 홍보가 필요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특정 정치 세력을 일방적으로 배제하거나 이들의 의견 개진이 무시당하거나 외면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둘째,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관한 정확한 목표 설정과 이를 위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 목표 설정과 관련하여 제주4·3기록물의 가치를 파악하고 문화유산으로 활용하는 ‘과정’이 중요한 것인지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려는 ‘결과’가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 보아야 한다. 유네스코에서는 국내적 절차를 거치고,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세계기록유산 등재만을 목표로 삼는 것은 근시안적 접근이다.

문화유산으로서 바라보고 활용하고자 할 때 가치 파악과 비교 연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며, 이를 통한 문화유산의 활용이 효율적이며 그 의미와 가치가 증대될 수 있다.

136) 이수정, 앞의 책, pp.14-15.

행정의 적절한 지원도 이와 관계되어 있다. 행정은 기본적으로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부득이 개입할 때는 담당하는 주관부처가 명확하고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주도의 경우 ‘특별자치행정국’에서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이 경우 목표는 세계기록유산 등재 그 자체가 된다. 그러기에 한시적 인력을 채용하여 졸속으로 등재 추진을 지원하려 하는 실정이라 판단된다. 문화유산의 가치 파악 및 활용을 연결지어 생각한다면, ‘세계유산본부’에 의한 등재 추진과 지원이 필요하다. 제주도청 업무 분장에 의하면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은 세계유산본부의 업무이다. 세계유산본부 내부의 ‘세계기록유산과’와 같은 ‘상설적 기구의 설치’와 이를 뒷받침할 ‘안정적 인력의 확보’가 시급하다.

셋째, 충분한 학술적 검토를 거친 후에 선별적으로 기록을 등재하여야 한다. 제주4·3사건에 관한 연구가 축적된 것은 역사학과 정치학 분야이다. 제주4·3기록물에 관한 연구는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의 경우 다양한 출처와 방대한 수량을 그 특징으로 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문화유산의 향유자가 그 의미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점이다. 확실한 가치가 보증되지 않는다면 그 유산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부정적이게 된다. 개별 기록 하나하나가 중요하고 가치가 있겠지만 문화유산은 가치가 좀 더 큰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준에 학술 연구가 되어 있는 것을 우선으로 하여, 등재 대상 기록물의 범위를 확장하여 나가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문화유산에 대한 ‘메타데이터’의 체계적 작성이 요구된다. 등재 대상인 모든 기록물에 대한 최소한의 메타 데이터가 확보되어야 한다.

V. 결 론

1. 연구 결과 정리

지금까지 제주4·3기록물의 문화유산적 가치를 토대로 세계기록유산 등재 가능성을 타진해 보았다. 연구의 결과 얻은 제주4·3기록물의 문화유산적 가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4·3기록물은 ‘역사적 가치’를 가진다. 제주4·3사건 당시의 기록과 그 이후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활동에서 생산된 기록물은 냉전의 역사, 한국 근현대사, 한국의 민주주의 이행과 공고화라는 역사적 시기와 변화의 모습을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둘째, 제주4·3기록물은 ‘학술적 가치’를 가진다. 제주4·3기록물은 그 범주에 따라 다양한 학문에서 연구의 자료로 쓰일 수 있다. 또한 추가 진상조사 시에 우선으로 재확인되어야 할 기초자료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제주4·3기록물은 ‘상징적 가치’를 가진다. 제주4·3기록물은 폭력과 갈등이라는 ‘과거의 역사’를 평화와 인권 그리고 통일이라는 ‘미래의 가치’로 승화시키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화해와 상생’의 가치를 구현하고 있다. 제주도민은 과거의 피해를 극복하고 공적 인정 단계를 거쳐 지금에 이르렀다. 그러한 차원에서 제주는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되었다. 증가하는 제주4·3평화공원 방문객 수와 제주4·3사건에 대한 관심은 제주4·3기록물이 평화와 인권의 상징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제주4·3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가능성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가 있는데 긍정적 요소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제주4·3기록물의 등재는 세계기록유산의 주요 목적과 부합한다. 둘째, 제주4·3기록물을 구성하는 기록들이 세계기록유산의 등재대상에 각각 해당하고 등재 기준을 충족시킨다는 점이다. 셋째, 기존 제주4·3사건에 관한 학술적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과 우리나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인프라와 경험 및 노하우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있어 극복해야 할 문제점도 존재하였다. 첫째, 유네스코에서 세계기록유산 등재 접수를 받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소장 되어 있는 다양한 기관의 기록물들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모든 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제주4·3사건의 성격을 드러내는 정확한 명칭이 없다는 점이다. 세계기록유산 등재 가능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등재 추진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하였다. 첫째,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둘째,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관한 정확한 목표 설정과 이를 위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충분한 학술적 검토를 거친 후에 선별적으로 기록물을 등재해야 한다.

2. 연구 의의와 향후 과제

본 연구의 전개는 제주4·3사건의 기록과 기억을 모아놓은 제주4·3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기 위한 필요성을 문화유산적 가치를 통해 검토하고, 가능성을 확인하여, 방향성을 제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세계기록유산 사업에 관한 전체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앞으로 세계기록유산 사업에 등재를 추진하는 대상인 제주4·3기록물에 대한 사전적 연구의 필요성에 부응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제주4·3기록물에 대한 문화유산적 접근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 제주4·3사건에 관한 연구는 사건 그 자체에 대한 역사적·정치적 접근이 주를 이뤘고, 4·3특별법 이후 학문의 방향이 다양화되기 시작하였으나 제주4·3사건 관련 기록에 대한 연구는 미진하다. 기록학의 주요 개념을 사용하여 제주4·3기록물에 대한 연구를 시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제주4·3사건의 기록과 기억을 모아놓은 제주4·3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대상물에 대한 연구가 사전에 이루어지고 이를 토대로 추진되어야 함을 제시했다는 점에 본 논문의 의의가 있다.

또한 제주4·3기록물을 생산 주체와 내용 그리고 생산된 결과의 따라 구분하여 그 범주별로 어떠한 기록이 있고 기록물로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소장기관과 특징은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었다.

세계기록유산 등재의 가능성 연구는 문화유산의 활용이라는 보다 거시적 차원에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 이어 다음과 같은 후속연구도 필요하다. 우선, 등재과정과 그 이후에도 제주4·3사건과 관련된 다양한 기록물들이 발생 배경과 이유, 내용 등 주제 분류 기준과 방법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분류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본 작업과 세계기록유산 등재 이후에는 제주4·3기록물에 대한 연구가 자료적 의미를 넘어 역사적·교육적·문화적 활용 관련 연구로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주4·3사건에 대한 학제적 연구가 필요하며, 역사학자·인류학자·법학자·의학자·심리학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협업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세계기록유산 등재 목표 이후에는 제주4·3사건의 의미를 심화·확대시키는 노력을 통하여 아픈 역사를 넘어 미래 준비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이러한 제주4·3의 역사적 의미에 조그마한 보탬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참 고 문 헌(参考文獻)

1. 단행본 및 편·역서

- 광주광역시, 『1980년 5월의 기록, 인류의 유산되다: 5·18 민주화 운동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백서』, 새날출판사, 2013.
- 김정하, 『기록물 관리학 개론』, 아카넷, 2007.
- 노민영 편, 『잠들지 않는 남도(제주도 4·3 항쟁의 기록)』, 온누리, 2018.
- 박찬식, 『4·3과 제주 역사』, 도서출판 각, 2008.
- 신희권, 『문화유산 학개론』, 사회평론아카데미, 2018.
- 양조훈, 『4·3 그 진실을 찾아서』, 도서출판 선인, 2015.
- 유네스코 저, 김윤경 역,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예문사, 2015.
- 이수정, 『문화재 보존 윤리』, 그래픽코리아, 2017.
- 제주 4·3 연구소, 『4·3 국가 폭력과 기억』, 한그루, 2018.
- 제주 4·3 위원회, 『제주 4·3 사건 진상 조사 보고서』, 도서출판 선인, 2003.
- 제주 4·3 위원회, 『화해와 상생: 제주 4·3 위원회 백서』, 일흥, 2008.
- 제주 4·3 평화재단, 『제주 4·3 평화재단 10년사 2008~2018』, 도서출판 각, 2018.
- 제주 4·3 평화재단, 『제주 4·3 70주년 어둠에서 빛으로』, 하나CNC, 2017.
- 제주 4·3 평화재단, 『4·3과 평화』 10호, 2012.
-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제주 4·3 연구의 새로운 모색』, 제주대학교 출판부, 2013.
- 한국국학진흥원, 『한국의 세계기록유산』, 준디자인, 2018.
- 한국외대 기록학연구센터 편, 『구술 기록 관리 방법론 연구』, 도서출판 더 로드, 2015.

2. 학위 논문 및 학술·일반논문

- 강혜경, 「한국 경찰의 형성과 성격(1946-1953)」,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2.
- 김득중,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의 법·역사적 접근: ‘국방경비법’을 중심으로”, 고려대아세아문제연구소, 『아세아연구』 제53권 제4호, 2010.
- 김영범, “기억에서 대항기억으로 혹은 역사적 진실의 회복: 기억투쟁으로서의 4·3문화 운동 서설”, 전남대 5·18연구소, 『민주주의와 인권』 제3권 제2호, 2003.
- 김은희, “4·3증언조사의 성과와 향후 과제: 1000인 증언채록집 추진사례를 중심으로”, 제주4·3연구소, 『4·3과 역사』 제15호, 도서출판 각, 2015.
- 김창후, “넬슨 특별감찰보고서 : 제주도의 정치 상황에 나타난 제주도지사 유해진”, 제주학회, 『제주도연구』 제17집, 2000.
- 김창후, “4·3진상조사보고서 작성과 미국자료”, 제주4·3연구소, 『4·3과 역사』 제1호, 도서출판 각, 2001.
- 김현준, “해외에서의 4·3연구 동향과 4·3의 세계화 방향”, 『4·3과 역사』 제11호, 도서출판 각, 2011.
- 류호철, 「공공재로서 문화유산의 의의와 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5.
- 박구병, “진실·화해위원회 이후: 아르헨티나와 폐루의 배·보상과 추모 정책”, 서울대 라틴아메리카연구소, 『이베로아메리카 연구』, 제21권 제1호, 2010.
- 박명림, 「제주도 4·3 민중항쟁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학위 논문, 1988.
- 박성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제도의 고도화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기록관리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8.
- 박찬식, “한국전쟁기 제주4·3관련 수형인 학살의 실상: 수형인명부를 중심으로”, 『4·3과 역사』 제1호, 도서출판 각, 2001.
- 박찬식, “제주4·3사건 당시 대중운동과 무장투쟁”, 한국근현대사학회, 『한국근현대사연구』 제84권, 2018.
- 서유림, 「제주 4·3 기록 연구 : 제주4·3평화재단 소장기록을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기록관리학과 석사학위 논문, 2019.
- 송정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기준의 개선방안연구: 유럽·북아메리카기록 유산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기록관리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9.

- 양정심, 「제주4·3항쟁연구」,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5.
- 양정심, “제주4·3항쟁에 관한 연구: 남로당 제주도위원회를 중심으로”, 수선사학회, 『사립』 제11권, 1995.
- 양한권, 「제주도 4·3폭동의 배경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석사학위 논문, 1988.
- 염미경, “4·3증언조사의 성과와 향후 과제: 1000인 증언채록집 추진사례를 중심으로”, 제주4·3연구소, 『4·3과 역사』 제15호, 도서출판 각, 2015.
- 오승진, “국제법상 제노사이드 금지와 국가의 책임: 제주 4·3 사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중심으로”,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제61권 제4호, 2016.
- 이성우, “국가폭력에 대한 기억투쟁”,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오토피아』 제26권 제1호, 2011.
- 이정연, “인권 기록유산의 가치와 지평의 확산: 5·18민주화운동기록물을 중심으로”, 한국기록학회, 『기록학연구』 제45호, 2015.
- 이진우, 「문화유산 활용의 이론과 활성화 체계 연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유산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8.
- 이춘선, “해방 직후 미 군정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한국의 국가성과 제주4·3사건을 중심으로”,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제62권 제2호, 2017.
- 장윤식, 「제주4·3사건 초기 무장대의 조직과 활동: 제주도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의 분석」, 제주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6.
- 전명혁, “기록과 역사: 역사서술에서 기록물과 사료, 역사이론의 관계”, 한국기록학회, 『기록학연구』 제11호, 2005.
- 전소윤, 「한국 세계기록유산 관련 정보의 활용 방안」, 경북대학교 기록학과 석사학위 논문, 2014.
- 정용옥, “제주 4·3 연구와 미군정 자료”, 제주4·3연구소, 『4·3과 역사』 제1호, 도서출판 각, 2001.
- 조유정, 「제주 4·3 사건 기록 수집 정책에 대한 연구」, 명지대학교 기록관리전공 석사학위 논문, 2019.
- 허호준, 「냉전체제 형성기의 국가건설과 민간인 학살 : 제주4·3사건과 그리스 내전의 비교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0.
- 허호준, “1947년 냉전체제의 형성과 제주도” 제주4·3연구소, 『4·3과 역사』 제17호, 도서출판 각, 2017.

3. 신문 자료

- 고영진, 『제민일보』(2018.04.08), “소녀들의 이야기 기록 유산 등재무산”,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509431>(검색일: 2019.05.30).
- 김동은, 『JIBS제주방송』(2019.01.02), “제주4.3기록…문화재청 사전 심사 중단”, <https://www.jibs.co.kr/news/replay/viewNewsReplayDetail/2019010221355534150>(검색일: 2019.05.30).
- 김성진, 『제주의소리』(2019.04.04), “대통령의 사과와 국방부·경찰청장의 유감 표명”, <http://www.jejud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301364>(검색일: 2019.05.30).
- 박미라, 『제민일보』(2013.03.22), “4·3기록물 유네스코 유산 등재…세계사적 의미 정리 관건”, <http://m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06416>(검색일: 2019.05.30).

4. 인터넷 웹사이트

- 고려대학교 문화유산학 협동과정, <http://kuchs.korea.ac.kr/kuchs/index.do>.
- 국가기록원, <http://www.archives.go.kr/next/viewMain.do>.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국회도서관, <https://www.nanet.go.kr/main.do>.
- 세계자연유산센터, <http://wnhcenter.jeju.go.kr>.
- 온나라 정책연구(PRISM), <http://www.prism.go.kr/homepage/main/retrieveMain.do>.
-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https://en.unesco.org/programme/mow>.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https://www.unesco.or.kr>.
- 제주특별자치도, <https://www.jeju.go.kr/index.htm>.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http://www.council.jeju.kr>.
- 제주4·3아카이브, <http://www.43archives.or.kr/main.do>.
- 제주4·3연구소, <http://www.jeju43.org>.
- 제주4·3평화재단, <https://jeju43peace.or.kr>.

해녀박물관, <http://www.jeju.go.kr/haenyeo/index.htm>.

행정안전부 과거사 관련 업무지원단, <http://www.pasthistory.go.kr>.

5·18민주화운동기록관, <http://www.518archives.go.kr>

5. 회의 및 보도자료

문화재청, 2011·2013·2015·2017년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 회의자료.

유네스코, 제11·12·13차 국제자문위원회총회 회의자료.

유네스코, 2013 세계기록유산 등재 인권기록물 소장기관 회의자료.

제주특별자치도, 2018년 1월 26일 특별자치행정국 보도자료.

제주4·3평화재단, 2018년 11월 10일 보도자료.

6. 전자 자료



국가기록원, “기록학개론”,http://www.archives.go.kr/archivesdata/upFile/palga_n/1398041084851.pdf(검색일:2019.05.30).

시귀선, “해방이후행형기록소개”, [http://www.archives.go.kr/nex/commn/archivedata/render.do?fileP
ath=F757046696d652F70616d67616e2F3230303630363238313035313339938342e706466](http://www.archives.go.kr/nex/commn/archivedata/render.do?fileP ath=F757046696d652F70616d67616e2F3230303630363238313035313339938342e706466)(검색일 2019.05.30).

안종철, “5·18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고찰”, <http://www.e-donghak.or.kr/bbs/dataimg/hs1506.pdf>(검색일:2019.05.30).

김영석, "UN 강제실종협약의 가입을 위한 국내법적 절차 검토 최종보고서", http://www.prism.go.kr/homepage/entire/retrieveEntireDetail.do;jsessionid=0DC7B4C145AC501D4C9F29EE4A19D3F6.node02?cond_research_name=&cond_research_start_date=&cond_research_end_date=&research_id=1270000-201500016&pageIndex=2&leftMenuLevel=160 (검색일: 2019.05.30).

【Abstract】

A Study on the Possibility of Registering the Memory of the World through the Cultural Heritage Value of Jeju 4·3Events Archives

Hyun Soo-sung

Department of Natural and Cultural Heritage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Social Education

Advisor Professor Jang Seung-he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ultural heritage value of Jeju 4·3 Events Archives which are a collection of memories and records of the events, and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listing them in the Memory of the World Register. Many qualifications are required for the listing in the Memory of the World Register and it is judged that the archives related to Jeju 4·3 Events are a valuable asset that should not be destroyed in human history in terms of historical, academic, and symbolic value. Despite the characteristics of each of the archives, the authenticity, which is the qualification of the Memory of the World, of Jeju 4·3 Events Archives was secured because their origins were identified. In addition, in light of the peculiarity of Jeju 4·3 Events and the singularity of these archives to be listed in the Memory of the World Register, Jeju 4·3 Events Archives are the records that should not be destroyed in [human society](#). This coincides with originality and irreplaceability which are the qualifications for the Memory of the World. World significance, the standard of the Memory of the World Register, can be analyzed by dividing into time, place, people, theme, and form. The concept that represents Jeju 4·3 Events Archives regarding ‘time’ is ‘Cold War’ and in terms of ‘place,’ it is ‘Jeju Island.’ Jeju island has a meaning as a place of occurrence and development of Jeju 4·3 Events, and also as a center of truth investigation activities to deal with the events. There are various ‘people’ related to Jeju 4·3 Events Archives. The most important people will refer to all the victims of Jeju 4·3 Events and there are also people who are directly and indirectly related to the events. The theme and subject of Jeju 4·3 Events Archives are the ‘violence’ and the ‘settlement of the past issues’ through the identification of facts about the violence and the recovery of honor of the victims. In terms of ‘form and style,’ Jeju 4·3 Events Archives can be classified into document

records and oral records. The Jeju 4·3 Events Archives are the Memory of World heritage of humanity that have sufficient historical and academic value and symbolic value in the aspect of cultural heritage value. This indicates that there is a need to promote the listing of Jeju 4·3 Events Archives in the Memory of the World Register in light of cultural heritage. This is because the authenticity, uniqueness, irreplaceability, and world significance of Jeju 4·3 Events Archives were confirmed in terms of the standard of the Memory of the World Project.

The positive aspects of the possibility of listing Jeju 4·3 Events Archives in the Memory of the World Register are as follows: First, the listing of Jeju 4·3 Events Archives in the Memory of the World Register coincides with the main purpose of the Memory of the World. Second, all the records constituting Jeju 4·3 Events Archives correspond to the subjects to be listed in the Memory of the World Register and satisfy the listing criteria. Third, in Korea, there has been considerable academic discussions on Jeju 4·3 Events, and there are enough infrastructure and expertise for the listing in the Memory of the World Register. On the other hand, the negative aspects of the possibility of listing are as follows: First, UNESCO has not received an application for the listing in the Memory of the World Register in recent years. Second, in order to list the records held by diverse institutions in the Memory of the World Register, it is necessary to obtain the consent from all the institutions. Third, there is no exact name that can reveal the characteristics of Jeju 4·3 Events. Nevertheless, in consideration of its value, the possibility that Jeju 4·3 Events Archives will be listed in the Memory of the World Register cannot be excluded. The dedication for the listing in the Memory of the World Register is necessary in order to enhance the cultural heritage value of Jeju 4·3 Events.

This study offers several suggestions based on the current state of the promotion to list Jeju 4·3 Events Archives in the Memory of the World Register and the possibility of listing. First, it is necessary to lead various stakeholders to participate in the process for the listing in the Memory of the World Register. Second, it is necessary to set accurate goals for the listing in the Memory of the World Register and to provide an appropriate support for this. Third, it is necessary to promote a selective listing of Jeju 4·3 Events Archives in the Memory of the World Register after a sufficient academic review. At the time of promoting the listing of Jeju 4·3 Events Archives in the Memory of the World Register,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identified the cultural heritage value of Jeju 4·3 Events Archives and examined the possibility of listing the Archives in the Memory of the World Register in advance. It is necessary to carry out a sufficient study prior to the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The value of the cultural heritage to be listed should be identified and the possibility of the listing should be examined. The result of this study suggests a great necessity and high possibility of listing Jeju 4·3 Events Archives in the Memory of the World Register. It is necessary to further examine the method of listing and adjust the time of listing.



Keywords:

Jeju 4·3 Events, Jeju 4·3 Events Archives, Memory of the World, possibility of listing,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historical·academic·symbolic value